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038-01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연구기관

(사)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

202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0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용역과제인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사)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주대 교수 최규홍

참여연구진

연구총괄 책임연구원 전주대학교 최규홍

참여연구원 (사)한농연 강창호

참여연구원 전주대학교 홍성하

참여연구원 충남대학교 백승민

요 약 문

연구는 농업기계화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이개호의원이 제안한 “한국농업기계진흥원”(이하 “진흥원”)설립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임. 현재 농업기계 관련 산업은 정책관련 3기관 119명이 정책수립·제도운영·훈련교육·농기계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관련 8기관군 1,920명이 농촌지도·농기계임대·농기계유통을 수행하며, 광의로 포함되는 5기관군 29,676명이 대학교육·농기계제작·연구위탁·기술확산을 수행하는 체계임. 기술수요 분석결과, 최근 5년 동안에 농업기계 부분의 정책 및 R&D 관련된 정부지원은 1,997.6억원이 집행(연평균 399.5억원) 되었음. 연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대학·출연연·국가연구소·지방연구원·생산자단체·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에서 수행되었으며, 농촌진흥청 내부과제도 모두 포함되었음.

“진흥원”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과기출연기관법” 검토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승인, 각 기관 통합 및 업무 재분장에 따른 갈등, 국가자산인 각종 연구장비, 천억원 이상의 기관이전 재원확보 및 기존부동산 매각의 한계, 구성원 신분변화에 따른 갈등요소 등 수많은 난제가 존재함. “진흥원”의 이전 설립을 고려할 때, 정주여건은 인구수와 비례하는데, 영광은 전주의 1/15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고, 특히 학교·교통·주택·생활 부분에서 불리하여, 가족동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거주환경 측면에서는 수원, 전주와 정주여건 및 편의시설에서 우위에 있는 광주권(영광관내) 혹은 전주권에서의 확대재편 검토가 필요함. 또한, 통합 대상기관들이 혁신도시로 1차 지방이전한지 몇 년 안됐고, 이전 대상지인 전남/영광이 광주권 이외에는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최근 농가인구의 고령화, 비전문귀농인구의 증가,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의 증가, 식량자급률의 감소, 외국산 농업기계의 수입증가, 밭농업 기계화율의 낮은 성장률 및 국내 농업환경(소량생산에 따른 부품 공용화)의 변화 필요성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따라 “진흥원”은 국내 농업기계화 정책연구에서 농기계 개발·실용화·보급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농기계 개발, 산업육성,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촉진법_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한 “진흥원” 설립은 일관된 정책집행을 위한 필요성이 타당한 것이 인정됨. 그러나 이전대상 기관들이 1차로 지방이전한지 실용화재단 1년, 농업공학부 5년 밖에 되지 않아 예산낭비 여지가 많고, 이전비용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도 쉽지 않으며, 산출된 총사업비는 965.9억원, 운영유지비는 869.3억원 규모임. 그리고 경제성분석에서 “순편익의 현재가치(NPV)”는 $\Delta 1,087.5$ 억원(운영유지비 제외 $\Delta 696$ 억원)으로 산출됨. 이상 연구결과, “진흥원” 설립후 2차 지방이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책임연구원 전주대학교 최규홍

목 차

I. 연구개요	9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12
II. 농촌진흥청 등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	15
제1절 기관별 역할 및 기능 등 현황 분석	17
제2절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328) 분석	21
제3절 최근 5년, 농업기계 관련 기술수요 분석	24
제4절 연구회 현황 및 분석	25
제5절 시사점	27
III. “진흥원” 설립시 기능 및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	28
제1절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30
제2절 합리적인 조정방안 제시	34
제3절 시사점	38
IV. “진흥원” 설립시 운영방안	39
제1절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운영방안 설계	41
제2절 소요비용 및 자원 충당방안 등 제시	44
제3절 시사점	53
V. “진흥원” 설립시 장단점 분석 및 타당성 검토	55
제1절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화 정책을 “진흥원”으로 통합시 장단점 분석	57
제2절 장단점에 따른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58
제3절 FGI(Focus Group Interview) 의견 수렴	59
제4절 시사점	60
참고문헌	61
별 첨	62

표 목 록

표 1. 농업기계 산업 현황(단위: 억원)	16
표 2. 정책관련, 정부·준정부 기관의 조직(실무부서) 현황	17
표 3. 집행관련, 지자체·유관 기관의 조직(실무부서) 현황	17
표 4. 농업기계 주요기관 광의의 조직(실무부서) 분류	18
표 5. 농업기계 관련 주요기관 현황	19
표 6. 농업기계 기관별 담당업무	20
표 7.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328)의 분석	22
표 8. 최근 5년('15~'19년) 농업기계 관련 기술수요 분석	24
표 9. '18년 출연연(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분석	25
표 10. 지방연구원(지자체 출연_연구회) 분석	26
표 11. 전남도청 소관 주요 공직유관단체_재단법인 목록 및 현황	26
표 12. 통합 대상 기관의 사업부서/지원부서 및 현황	30
표 13.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자격 및 제도	31
표 14. "진흥원" 설립시 지자체별 정주여건	33
표 15. "진흥원" 설립시 업무 조정 방안(안)	34
표 16.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35
표 17. "진흥원" 조직 및 인력구성(안)	42
표 18. 과학기술계 "출연연" 미래대응역량 지수 최종 측정지표	43
표 19. 이전 기관(예상)의 성격 및 현황	44
표 20. "진흥원" 구축을 위한 비용분석 내역(총괄)	44
표 21.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조성원가	45
표 22. 이전에 따른 기관별 건축비 소요비용	45
표 23.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부동산가격(건축물 제외) 추정	46
표 24. "진흥원" 설립에 따른 경제성 분석	49
표 25. "진흥원" 설립에 따른 연차별 경제성분석	49
표 26. "진흥원_부품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농기계산업 현황분석	50
표 27. "진흥원" 부품연구센터 단계별 추진(안)	51
표 28. "진흥원" 부품연구센터 단계별 시설 규모(안)	51
표 29. "진흥원" 부품연구센터 단계별 시설구축 소요비용(안)	52
표 30. "진흥원" 부품연구센터 관련 연 소요 운영유지비, 운영비 분석	52
표 31. "진흥원" 설립에 따른 추정매출과 경제적 기대효과	54
표 32. FGI를 활용한 "진흥원" 설립 의견 수렴(요약)	60

그림 목록

그림 1. 비용 추산을 위한 부지(안)	10
그림 2. 영광관내 "진흥원" 입지(안)	37
그림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정(예시)	40
그림 4. "진흥원" R&D 사이클	41
그림 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47
그림 6. 이전 기관의 현재 부지 위성사진	48
그림 7. "진흥원" 설립에 따른 효율적 정부정책 집행	53
그림 8. "진흥원" 설립시 농업기계화 추진 SWOT 분석	54

CH | .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대 1. 연구개요

연구개요

- 연구배경) 농업기계촉진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328) 분석
- 연구목적) (假稱) 재단법인)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 연구범위) 농업기계화 정책추진 각 기관 현황조사 및 분석, 진흥원 설립시 각 기관 업무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진흥원 설립시 운영방안, 진흥원 설립시 장단점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이전부지 가정**] 연구는 「한국농업기계진흥원 타당성 분석」 용역으로 농업기계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전주 소재의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와 익산 소재의 실용화재단을 통합하여, 연구팀에서 임의 선정된 전남/영광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였는데, 부지는 비용 추산을 위해 임의로 선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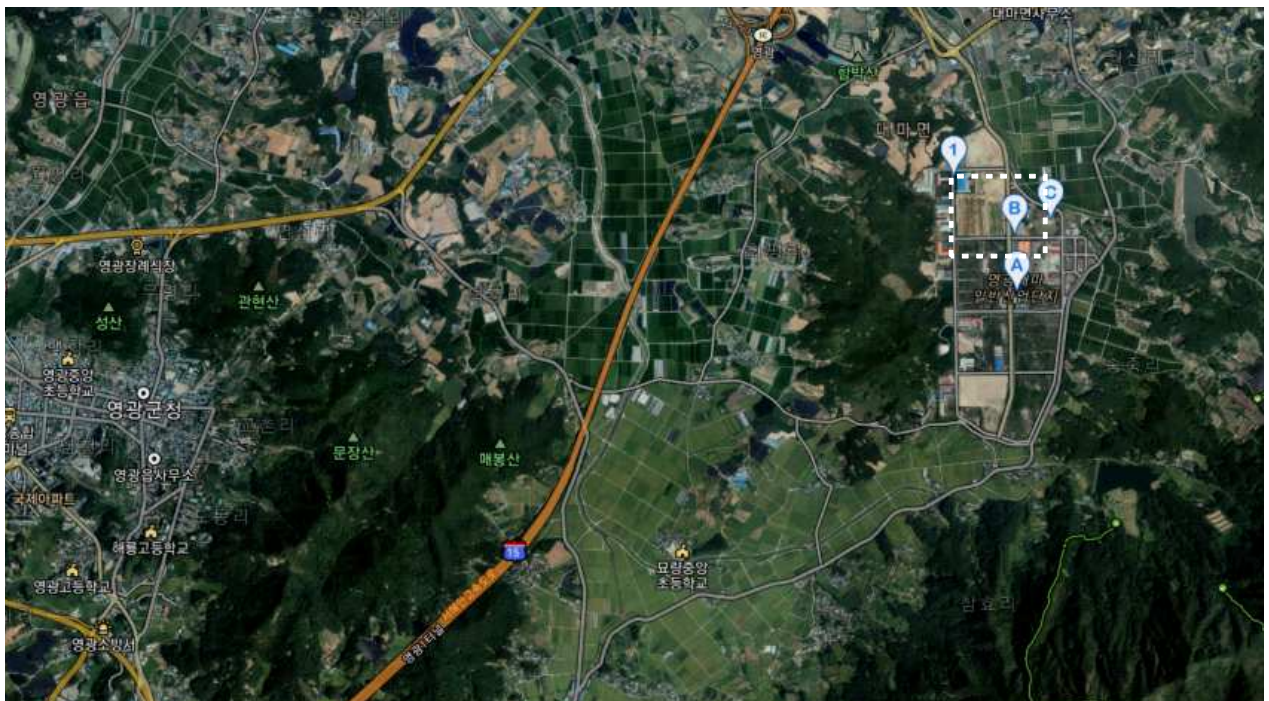


그림 1. 비용 추산을 위한 부지(안)

※ 비용 추산을 위해 임의의 부지로 선정된 "영광대마산업단지(전남 영광 대마 송죽리 1030-1)" 는 분양 중인 상태로 "영광군청"에서 직선거리로 5.5km로 인접하고 있음. 부지면적(흰색점선: 동서 600m, 남북 525m)은 315,000m²로, 현 농업공학부 270,000m² 및 실용화재단 검정파트 45,000m²의 부지와 같은 규모로 이전하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 선정함.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개요 및 일정

- 과 제 명 :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 추진일정 : 착수보고회(10월), 중간보고회(12월), 최종보고회(1월)

2. 추진 목적

- 이개호의원이 농업기계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농업기계진흥원”설립을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안 발의(2016.9.19.)
 -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추진의 타당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 본 안건은 농해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2017.1.11.). 계류 중

3. 연구용역 수행방법

- 국회(이개호의원)에서 발의한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을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분석하여
 -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확보
-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국회 등 대응자료로 활용
 -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시 준비 등에 활용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1. 연구범위

- 농촌진흥청 등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 기관별 역할 및 기능 등 현황 분석

-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시 진흥원의 기능 및 현재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해 한국농업기계진흥원으로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인 조정 방안 제시

-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시 운영방안
 -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시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운영방안 설계
 - 소요비용 및 재원 충당방안 등 제시

-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시 장·단점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화 정책을 한국농업기계진흥원으로 통합시 장·단점 분석
 - 장·단점에 따른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2. 추진체계

《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체계 》

과업 1) 농촌진흥청 등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 1) 기관별 역할 및 기능 등 현황 분석

관계법령 확인 ↑ ↓ 현황 조사
국가기관 통계·자료 이용 ↑ ↓ 현황 분석

과업 2)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시 진흥원의 기능 및 현재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

- 1)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해 한국농업기계진흥원으로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인 조정 방안 제시

관련기관 공식 역할 및 기능 확인 ↑ ↓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기관 통계·자료 이용 ↑ ↓ 문제점 분석

과업 3)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시 운영방안

- 1)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시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운영방안 설계
- 2) 소요비용 및 자원 충당방안 등 제시

국가기관·공인기관 통계·자료 이용 ↑ ↓ 운영방안 설계
국가기관 기준·계산방법 이용 ↑ ↓ 소요비용 산출

과업 4)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시 장·단점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1)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화 정책을 한국농업기계진흥원으로 통합시 장·단점 분석
- 2) 장·단점에 따른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국가기관·공인기관 통계·자료 이용 ↑ ↓ 착수보고회 (2019년 10월)
국가기관 기준·계산방법 이용 ↑ ↓ 중간보고회 (2019년 12월)
최종보고회 (2020년 01월)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제시

3. 추진경위

《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경위 》

일자	구분/장소	내용	기관	비고
2019.10.04	용역계약	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201910047F6-00)	(사)한국농업기계화 정책연구원	2019.10.10~ 2020.01.07
2017.01.11.	국회	농해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계류중	이개호 의원실	
2016.09.19.	국회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기계진흥원”설립	이개호 의원실	
2015.12.29.	장성 문화원	농기계 관련 기관과 시설의 통합 및 효율적 R&D 전담 연구원 설립을 위한 사전 토론회 개최	이개호 의원실	

- 이 하 여 백 -

대 II . 농촌진흥청 등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제1절 기관별 역할 및 기능 등 현황 분석

제2절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328) 분석

제3절 최근 5년, 농업기계 관련 기술수요 분석

제4절 연구회 현황 및 분석

제5절 시사점

CH II. 농촌진흥청 등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기관 현황조사 및 분석

- '18년 농업기계 시장은 41.763억 원 규모임(내수 22,527, 수출 12,504, 수입 6,732)
- 관련 종사자 31,717명은 정책관련 0.4%, 집행관련 6.0%, 광의포함 93.6% 근무 중임
- 촉진법 일부개정안(20160919)은 효율적 연구체계 구축으로 "재)진흥원" 설립 발의함
-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회는 "정부출연기관법"과 "과기출연기관법"에 근거한 "출연연"임
- 최근 5년 농업기계 관련 기술수요는 1,997.6억원, 연평균 399.5억원 규모임

◇ **농업기계 산업 현황**] '18년, 산업은 4조 1,763억원 규모로 파악되는데, 내수 54%, 수출 30%, 수입 16% 구성임. '18년 농업기계는 90.5만대를 수출하여 수출액 10.4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무역수지 4.8억 달러로 파악됨.

표 1. 농업기계 산업 현황(KAMICO, 단위: 억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내 수(A)	20,570	21,010	21,032	23,957	22,989	21,520	22,527
수 출(B)	8,206	9,185	9,471	9,805	9,114	10,812	12,504
수 입(C)	5,863	6,017	5,940	5,235	5,183	6,252	6,732
합 계(A+B+C)	34,639	36,212	36,443	38,997	37,286	38,584	41,763

◇ 농업기계는 정책관련 3기관 119명(0.4%)이 정책수립·제도운영·훈련교육·농기계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관련 8기관군 1,920명(6.0%)이 농촌지도·농기계임대·농기계유통을 수행하며, 광의포함 5기관군 29,676명(93.6%)이 대학교육·농기계제작·연구위탁·기술확산을 수행하고 있음.

◇ 국회의원 이개호 대표 발의한 "촉진법 일부개정안"(20160919)은 사전 토론회(20151229) 등에서 "농기계의 효율적인 연구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립농기계연구원(이후 재)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으로 분산된 기관과 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연구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됨.

◇ 최근 5년('15~'19년) 농업기계 관련 기술수요 분석은 행정안전부 PRISM에 농업기계 정책관련 4.7억원이 집행되었음(연평균 2건, 0.94억원, 4,700만원/건). 그리고 같은 기간에 농업기계 관련 순수 R&D 기술수요는 1,733.7억원이 집행(연평균 346.74억원)되었고, 농업공학부 내부 R&D 예산을 포함하면 총 1,997.6억원(연평균 399.5억원) 규모임.

제1절 기관별 역할 및 기능 등 현황 분석

◇ **농업기계 관련 기관**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농업기계 관련 기관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11기관에 2,041명이 재직 중임(또한, 이와 별도로 3,005개 관련 산업체에는 27,509명이 재직(통계 별첨) 중임). 기관인원을 정부·준정부 기관과 지자체·유관 기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 정부·준정부 기관 : 3기관, 119명 (5.8%)
 - ❖ 지자체·유관 기관 : 8기관(기관군), 1,920명 (94.2%)
- } 11기관 2,039명

◇ **정부·준정부 기관** 정책관련 기관에는 3기관 119명이 재직 중이고, 각 기관의 주요업무는 정책수립, 제도운영, 농기계검정으로 분류됨.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정책관련, 정부·준정부 기관의 조직(실무부서) 현황(단위: 명)

기관명		담당부서	인원		주요업무
정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95	정책수립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7		제도운영
		교육훈련지원과	9		교육훈련
		농업공학부(4과/2팀)	79		연구개발
준정부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	13	21	성능검정
		ICT기자재검정팀	8		성능검정
3기관		합 계	119		

◇ **지자체·유관 기관** 집행관련 기관은 8기관 1,920명이 재직하며, 출연연 이외에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농촌지도, 농기계임대, 농기계유통 등을 업무 범위로 하는데, 조직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집행관련, 지자체·유관 기관의 조직(실무부서) 현황(단위: 명)

기관명		담당부서	인원	주요업무
지자체	도농업기술원(9개)	기술보급과	45	기술지도
	지자체 농업기술센터(141개)	농기계임대사업소(410개소)	991	농기계임대
출연연	재)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3	정책용역
	재)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연")	융복합농기계그룹	11	연구개발
조합	농업협동조합(169개)	농기계은행	845	농작업대행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4팀/1실/1본부	21	홍보복리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국산대리점	3	농기계유통
	한국중고농기조합	전국권역 17개사	1	중고유통
8기관		합 계	1,920	

◇ **광의의 분류** 농업기계는 정책관련 3기관 119명이 정책수립·제도운영·훈련교육·농기계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관련 8기관군 1,920명이 농촌지도·농기계임대·농기계유통을 수행하며, 광의포함 5기관군 29,676명이 대학교육·농기계제작·연구위탁·기술확산을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음.


- ❖ 정책관련 기관 : 3기관, 119명 (0.4%)
 - ❖ 집행관련 기관 : 8기관(기관군), 1,920명 (6.0%)
 - ❖ 광의포함 기관 : 5기관(기관군), 29,676명 (93.6%)
- } 16기관 31,715명 (100%)


표 4. 농업기계 주요기관 광의의 조직(실무부서) 분류(단위: 명)

업무	기관	부서	대상	기능	인원
정책수립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련기관	정책수립	3
	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정책기관	정책용역	3
	한국농업기계학회*	산학협동연구사업위원회	산업체	정책연구	1
제도운영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관련기관	제도운영	7
교육훈련		교육훈련지원과	지자체·농업인	훈련교육	9
연구개발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	산학연·농업인	연구개발	79
		에너지환경공학과			
		수확후관리공학과			
		재해예방공학과			
		발농업기계화연구팀			
		농업인안전보건팀			
	재)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농기계그룹	산업체		11
	대동 등 산업체(3,005개)*	임직원	농업인		27,509
	서울대 등 대학(16개)*	교수·대학원·학부생	산학연		2,16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가축질병팀	산학연	3		
농기계검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	산업체	성능검정	13
		ICT기자재검정팀	산업체	성능검정	8
기술이전		기술창출이전팀*	산업체	기술확산	3
농촌지도	도농업기술원(9개)	기술보급과	지자체·농업인	기술지도	45
농기계임대	지방자치단체(141개)	기술센터	농업인	농기계임대	991
	농업협동조합(169개)	농기계은행	농업인	농작업대행	845
복리증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합/4팀1실1본부	산업체	홍보선전	21
농기계유통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본부	농업인	농기계유통	3
중고유통	한국중고농기조합	본부	농업인	중고유통	1
16기관군				합 계	31,715

* : 광의포함 기관으로 농기학회, 산업체, 관련 대학, IPET_첨단·가축질병팀 및 FACT_기술창출이전팀 포함하여 분류

표 5. 농업기계 관련 주요기관 현황

기관명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기관소속	대한민국정부		
	기관현황 ('18년)	정부기관 예산: 9,382억원 총원: 1,884명			
	관련부서	첨단농기자재육성팀/역량개발과/농업공학부			
	관련인원	95명 (7/9/79)			
	부지면적	총면적	270,000 m ² (농공부만 산정)		
		건축물	13,120 m ² (7개동, 온실 제외)		
실험트랙		38,300 m ² (815m)			
기 타		218,580 m ²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우)54667				

기관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소속	농촌진흥청		
	기관현황 ('18년)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예산: 575억원 총원: 223명			
	관련부서	농기계검정팀/ICT기자재검정팀			
	관련인원	21명 (13/8)			
	부지면적	총면적	45,000 m ² (농기계 관련)		
		건축물	9,450 m ² (2개동)		
실험트랙		- m ²			
기 타		35,550 m ²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우)54667				

기관명	재)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소속	미래창조과학부		
	기관현황 ('18년)	출연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 예산: 3,452억원 총원: 1,377명			
	관련부서	융복합농기계그룹			
	관련인원	11명			
	부지면적	총면적	30,000 m ² (농기계 관련)		
		건축물	2,760 m ² (4개동)		
실험트랙		18,000 m ² (560m)			
기 타		9,240 m ²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3길 119 (우)54325				

◇ **기관별 담당업무** 주요 기관의 담당업무는 크게 “①정책수립”, “②연구개발·실용화”, “③대농업인 보급”으로 분류됨. 여기서 “정책수립” 부서의 경우 타농업부분 정책조율 등 독자적인 업무수행 기관이고, “대농업인 보급”은 지자체·민간 기관들로 전국적인 조직의 통합 및 이전이 쉽지 않음.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실용화” 관련 기관에 대한 분석에 집중함.

표 6. 농업기계 기관별 담당업무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업무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장·단기 계획 수립 농업기계화촉진법 운영 및 제도개선 농기계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농기계 구입지원/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용 면세유/농기계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농기계 보유량 조사에 관한 사항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에 관한 사항 	정책 ① 정책수립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사후검정제도 운영 및 신기술농업기계지정 농업기계 연구개발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농업기계용도 표시위반 여부조사 	조사	
	교육훈련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기술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농업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교육	
	산하 국립농업 과학원 농업공학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계화정책지원 및 농업기계 연구개발 	연구개발
		스마트팜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공정자동화·로봇화기술·스마트팜 연구·기술지원 	
		에너지환경공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 최적화·현대화 기술 개발 	
		수확후관리공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확후처리 및 가공 시설의 자동화·효율화 연구 	
		재해예방공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계 표준화, 안전성·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 	
		발농업기계화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원예작물 생산기계화, 발농업기계 실용화 연구 	
	농업인안전보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안전재해 통계구축, 근거기반 정책지원 연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종합/안전/국제규범/기술지도 검정 동력원기계/생물생산기계/보호구조물/운반차 검정 	검정
ICT기자재검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기자재/수확후처리시스템/에너지·저장시스템 검정 ICT융복합시스템/APC-GP/첨단농기계·시스템 검정 		
기술창출이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재)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농기계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자동화, 신뢰성평가 기술개발 지능형 농작업시스템 기술개발 소음진동해석 기술개발 피로해석 내구성평가 기술개발 	연구개발	
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보급, 전문농업인 육성 	보급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임대사업 	보급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개발지원, 수출입대행, 박람회개최, 통계생산 농기계 발전, 조합원상호간의 복리증진 도모 	유통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유통질서 확립, 조합원 교육/훈련/정보 제공 		
한국중고농기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 농업기계 유통 		

제2절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328) 분석

- ◇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촉진법")** "촉진법 제2조(정의)" 2항에서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총칭함. 또한 3항에서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총칭함.
- ◇ **농기계산업 발전 토론회** 국회의원 이개호 대표 발의한 "촉진법 일부개정안(20160919)"은 사전 토론회(20151229) 등에서 "농기계의 효율적인 연구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립농기계연구원(이후 재)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으로 분산된 기관과 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연구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됨.

"농기계 R&D 전담 국립농기계연구원 설립을" 농기계산업 발전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2780호(2015.12.29.)



▲ 지난 17일 전남 장성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농기계연구원 설립을 위한 농기계산업 발전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개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담양·함평·영암·장성)과 전라남도, 장성군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남도연합회가 주관한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영광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가 가칭 '국립농기계연구원 설립이 대안이다'인 만큼 농기계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경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농기계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농기계 연구개발의 분산된 연구진과 시설을 통합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현재 농기계 연구개발의 수행기관이 분산돼 있고 연구개발비 역시 산업체와 학계 등에 배분되면서 비효율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산된 농업기계 관련 기관과 부서를 통합하고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화, 상품화에 이르는 일관된 연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농기계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김경욱 교수는 "농기계연구원이 설립되면 국산 농기계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기계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아 보인다(이하생략).

◇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이하 "일부개정안")** 분석결과, "일부개정안"은 재단법인 설립을 "촉진법"에 준해 특정 행정기능(농기계 정책수립 등)을 수행하는 특별법인 성격임. 또한 연구개발 위탁·수탁 등 사업범위 및 정부출연 명기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임. "일부개정안"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328)의 분석

개 정 안(20160919)	분 석	
<p>제12조의5(한국농업기계진흥원의 설립 등)</p> <p>① 농업기계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농업기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농업기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 농업기계 연구인력·자원 관리 및 농업기계 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농업기계정책 연구, 농업기계 관련 사업의 개발 지원 및 기술 자문 농업기계 연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⑥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p> <p>⑥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주요 키워드 》</p> <p>연구·분석 기관 설립</p> <p>재단법인</p> <p>농기계와 관련된 이용, 임대사업촉진, 연구개발, 검정, 기술훈련, 사후관리, 정비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기타</p> <p>연구인력, 연구자원 관리, 기술관리정책 연구</p> <p>정책연구, 사업개발지원, 기술자문</p> <p>자료 수집·분석, 정보서비스 제공</p> <p>연구용역 위탁 및 수탁</p> <p>부대사업</p> <p>정부예산으로 사업비, 운영비 출연</p> <p>민법</p>	<p>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됨.</p> <p>그러나 "촉진법"의 "일부개정안" 제12조5-①항은 특정한 행정기능(합리적 농업기계 정책 수립)의 대행기관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한 특별법인 성격으로 판단됨</p> <p>"일부개정안" 제12조5-⑤항 각 호의 사업은 연구개발(수탁, 위탁)을 사업범위로 함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 성격임.</p> <p>또한 "일부개정안" 제12조5-⑥항에서 정부의 사업 및 운영 경비 출연을 명기함으로써 정부가 설립하는 "연구기관"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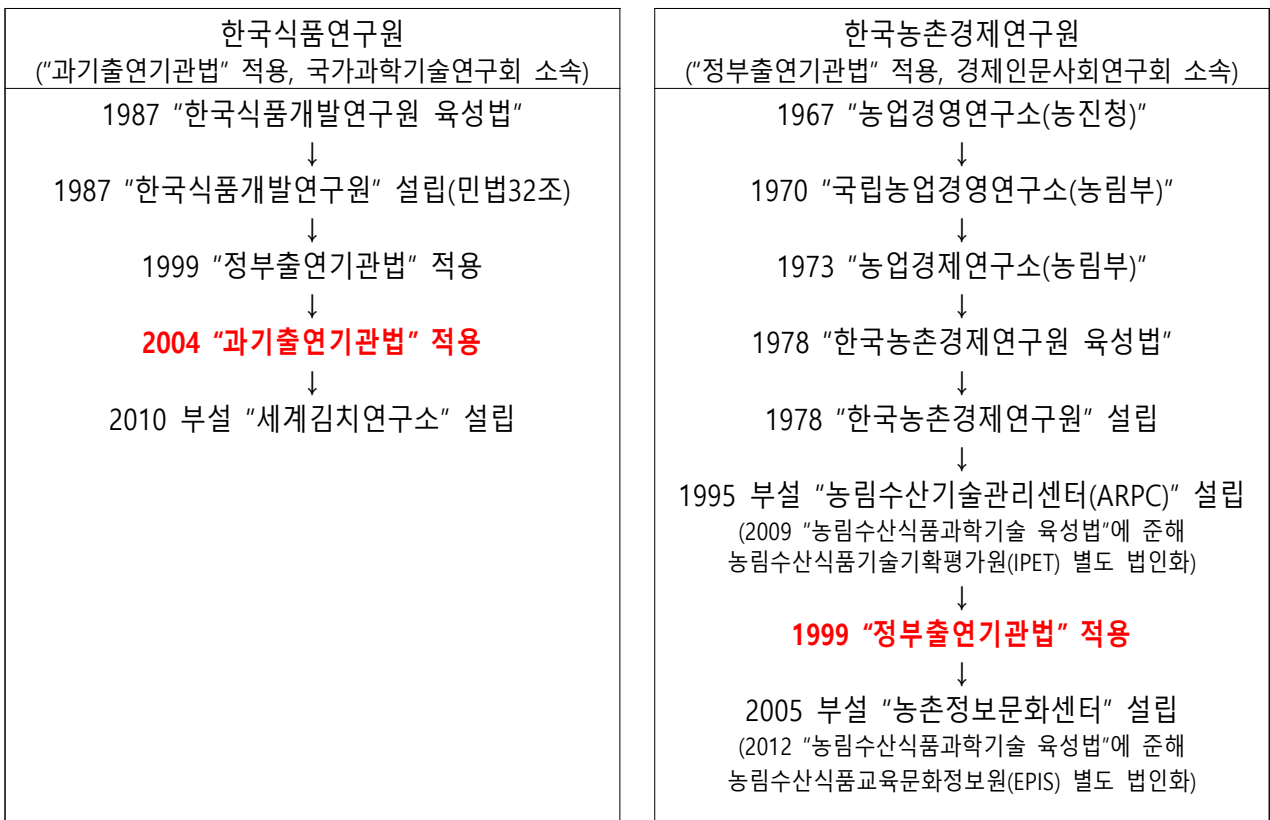
◇ **농업 관련 출연연 설립(사례)** 현재 대표적인 농업관련 출연연은 대표적으로 재)한국식품연구원과 재)농촌경제연구원이 대표적임. 2 기관은 각각 "과기출연기관법^{별첨}"과 "정부출연기관법^{별첨}"에 근거하며, 설립 연혁 및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정부출연기관법" : 주관부처(국무조정실)

- **제2조(정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제4조(법인격)**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법인

❖ "과기출연기관법" :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조(정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제4조(법인격)**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법인



주1) 설립 계획인 “출연연”은 지자체 출연 “지방연구원” 설립이 아니면, 연구기관으로 “정부출연기관법” 상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인과 “과기출연기관법” 상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법인에 해당하나, 과학기술계(농업기계 R&D 조직)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법인에 속함.

주2) 여기에서 두 개의 법률은 공통적으로 제5조(운영재원)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하며,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음.

제3절 최근 5년, 농업기계 관련 기술수요 분석

◇ **기술 수요**] 최근 5년('15~'19년) 기술수요 분석은 국가데이터베이스(fris/NKIS/prism)에서 검색된 정부출연 과제 조사·분석으로 진행하였음. 기술수요는 “출연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정책(광범위하게 농업기계를 포함)과 관련 107.6억원이 집행되었음(연평균 21.5억원). 행정안전부 PRISM에 농업기계 정책 관련 4.7억원이 집행되었음(연평균 2건, 0.94억원, 4,700만원/건). 농업기계 관련 순수 R&D는 1,733.7억원 집행(연평균 346.74억원), 농촌진흥청 내부 R&D예산을 포함하면 1,997.6억원(연평균 399.52억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❶ 정책용역('15~'19년) : 출연금 107.6억원 → (평균) 21.5억원/년
- ❖ ❷ 정책용역('15~'19년) : 출연금 4.7억원 → (평균) 0.94억원/년
- ❖ ❸ 연구개발('15~'19년) : 출연금 1,997.6억원 → (평균) 399.52억원/년

표 8. 최근 5년('15~'19년) 농업기계 관련 기술수요 분석

구 분	정책관련		❸ R&D 관련 ¹⁾
	❶ “krei” 자체(기본/일반) ²⁾	❷ 온-나라 정책연구 ³⁾	
	금액(억원)	금액(억원)	금액(억원)
산업통상자원부	-	-	635.0
농림축산식품부	-	3.9 ⁴⁾	513.1
농촌진흥청(농공부)	-	0.8 ⁵⁾	101.2(26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39.5
중소벤처기업부	-	-	140.8
기 타	107.6	-	104.2
소 계	107.6	4.7	1,733.8(1,997.6)

◇ **분석결과**] 기술수요 분석결과,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출연연_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대부분 수행된 정책관련 R&D를 제외한, 농업기계 부분의 순수 R&D 관련된 정부지원 과제(❸)는 1,997.6억원(연평균 399.52억원)이 집행되었음. 연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대학·출연연·국가연구소·지방연구원·생산자단체·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에서 수행되었으며, 농촌진흥청 내부과제도 모두 포함되었음.

1)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20년 농식품 R&D 신규사업 설명회_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사업 2020년도 추진계획 발표자료 43쪽
 2) 국가정책포털(NKIS) 데이터베이스 기준(https://www.nkis.re.kr:4445/subjectResearch_list.do)_최근 5년 데이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집
 3) 온-나라 정책연구 데이터베이스(<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_최근 5년 데이터(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수집
 4) 과제목록(최근 5년, 농기관련):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 육성방안 마련 6,650만원, 식물공장 중장기 정책 수립 방안 연구 4,750만원, 스마트 팜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6,270만원,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8,450만원, 수출촉진을 위한 농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8,909만원, 발작물 경영규모별 농기계 이용형태 및 경영비 상관분석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방안 연구 3,800만원
 5) 과제목록(최근 5년, 농기관련): ICT기반 정밀농업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1,900만원, 4차산업혁명 대응 기술보급 추진 방안 1,850만원, ICT 융복합 농기계 기술동향 및 교육체계 개선 용역 1,890만원, ICT와 연계한 기술보급 방향설정 및 로드맵 수립 연구 2,800만원

제4절 연구회 현황 및 분석

◇ **연구회**] "정부출연기관법"과 "과기출연기관법"에 근거하는 "연구기관"은 KDI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소, KIST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개소가 대표적인데 다음과 같음.

표 9. '18년 출연연(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분석

구분	기관	설립(년)	인원(명)	매출(억원)	비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한국개발연구원)	1972	284	937.6	26개소		
	KDI국제정책대학원	-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7	61	111.8			
	국토연구원	1978	-	305.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106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89	166	356.7			
	산업연구원	1982	188	299.0			
	에너지경제연구원	1986	124	274.3			
	육아정책연구소	2005	48	83.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88	168	221.1			
	통일연구원	1991	80	107.3			
	한국교육개발원	1972	162	757.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4	275	1,454.3			
	한국교육통계연구원	1987	291	383.1			
	한국노동연구원	1989	107	19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132	367.2			
	한국법제연구원	1990	91	15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1	208	334.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83	105	21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2	177	356.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7	161	68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89	68	129.8			
	한국해양정책개발원	1997	304	338.1			
	한국국형정책연구원	1991	83	156.7			
	한국환경정책연구원	1989	70	105.6			
	한국환경정책연구소	1997	172	39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89	805		2,991.2	25개소
		국가핵융합연구소	1996	269		1,686.2	
		한국한의학연구원	1994	184		478.6	
		한국원자력연구원	1977	1,450		4,760.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85	408		1,408.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91	566		1,313.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96	853		6,698.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99	372		1,027.8	
		한국천문연구원	1999	204		628.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75	439		226.6	
한국생물자통연구원		1989	1,377	3,45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76	2,021	5,669.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3	452	442.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96	311	172.2			
한국식품연구원		1987	365	537.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1	498	-			
한국기계연구원		1976	382	1,437.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77	460	1,532.2			
한국전기연구원		1985	414	1,264.9			
한국화학연구원		1976	658	1,609.4			
KFRI부설 세계김치연구소		1987	61	142.5			
KIMM부설 재료연구소		1976	527	968.4			
KRICT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2002	240	387.2			
KIST부설 녹색기술센터		2012	33	93.9			

◇ **지방연구원** 지자체 출연 지방연구원은 서울 29개소 등 각 지자체에 368개소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 중인데,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재단법인의 개소 및 규모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지방연구원” 형태로 운영 중에 있음.

표 10. 지방연구원(지자체 출연_연구회) 분석

구분		주요 기관		비고
연구회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	서울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서울 29 대전 10
		서울기술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부산 16 광주 14
		서울여성능력개발원	대구경북연구원	인천 31 울산 8
		인천발전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대구 14 세종 2
		인천여성가족재단	광주전남연구원	경기 72 강원 28
		경기연구원	전남여성플라자	전남 27 전북 19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북연구원	충남 23 충북 16
		수원시정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남 24 경북 29
		고양시정연구원	제주연구원	제주 6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
		강원연구원	충남연구원	368개소
		부산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충북연구원 등	
		울산발전연구원		

◇ **전남 공직유관단체** 전남도청 소관 공직유관단체로 전남테크노파크 등 27개소의 재단법인이 운영 중인데 이중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연구원법)”에 준해 ‘18년 정상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과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 대표적임. 여기서, 광주전남연구원은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규모이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농촌진흥청의 3개부 규모임.

표 11. 전남도청 소관 주요 공직유관단체_재단법인 목록 및 현황

기관		매출 (억원)	직원수 (명)	평균연봉 (만원)	영업이익 (억원)	기준 년도
재단법인	재)광주전남연구원	77.4	78	4,626	-7.7	'18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264.9	241	4,749	-46.3	'18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249.7	57	3,498	6.3	'18
	재)녹색에너지연구원	8.5	25	4,089	-2	'18
	재)전남테크노파크	30.4	123	4,640	-65.9	'16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3	45	4,119	1.3	'17
	평 균	105.5	94.8	4,286.8	-19.1	-

제5절 시사점

- ◇ **농기계계** 산업은 정책관련 3기관 119명이 정책수립·제도운영·훈련교육·농기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관련 8기관군 1,920명이 농촌지도·농기임대·농기유통을 수행하며, 광의로 포함되는 5기관군 29,676명이 대학교육·농기계제작·연구위탁·기술확산을 수행하는 체계임.
- ◇ **일부개정안** 국회의원 이개호 대표 발의한 “촉진법 일부개정안(20160919)”은 사전 토론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기계계의 효율적인 연구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으로 분산된 기관과 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정책 및 R&D를 지원하는 농업기계화정책 총괄조직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됨.
- ◇ **일부개정안 분석결과** 재단법인은 “촉진법 일부개정안(20160919)”에 준해 특정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특별법인 성격임. 또한 연구개발 위탁·수탁 등 사업범위 및 정부출연 명기는 “정부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임. 설립 계획인 약칭 “출연연”은 법률적으로 연구기관으로 “과기출연기관법” 상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법인에 속함. 법률 제5조(운영재원)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하며,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을 명기함.
- ◇ **기술수요** 또한, 현황으로 기술수요 분석결과, 최근 5년 동안에 농업기계 부분의 순수 R&D 관련된 정부지원은 농업공학부를 포함하여 1,997.6억원이 집행(연평균 399.52억원) 되었음. 연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대학·출연연·국가연구소·지방연구원·생산자단체·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에서 수행되었음. 따라서 농업기계 관련 기술수요는 연평균 399.52억원으로 농촌진흥청 내부과제까지 포함된 규모임.
- ◇ **시사점** 현재 시점에서 “촉진법 일부개정안(20160919)”으로 분산된 농업기계 R&D 기관과 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연구체계 구축은 3기관(농촌진흥청_첨단농기자재육성팀·역량개발과·농업공학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_농기계검정팀·ICT기자재검정팀·기술창출이전팀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_융복합농기계그룹) 148.5명(실무부서 130, 지원부서 18.5)의 인적구성과 기술수요 연 399.5억원 규모임. 여기서 파악된 총원과 기술수요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부설기관 제외)” 소속의 기존 과학기술계 “출연연” 총원 평균 624.4명과 연평균 매출 1,965.1억원에 대해 각각 23.8%, 20.3% 수준임.

대 III. “진흥원” 설립시 기능 및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

제1절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제2절 합리적인 조정 방안 제시

제3절 시사점

CH III. “진흥원” 설립시 기능 및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

- “진흥원” 대상 기관은 참여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1차 이전한 기관임
- “진흥원” 설립시 농업기계 관련 3기관(12개 과·팀·그룹) 정원 148명을 대상으로 함
- “진흥원” 이전부지 영광은 정주여건이 전주의 1/15 수준으로 광주권 검토 필요함
- 기관별 지원부서 통폐합으로 정책연구, R&D 정원을 추가확보하여 연구효율을 극대화함
-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사례로 분석함

- ◇ **지방이전**]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전체 154개(소속기관 44, 공기업 16, 준정부기관 49, 기타 공공기관 45)인데,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개, 세종시 이전기관 20개, 개별 이전기관 19개임. 여기서 본 연구와 관련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포함되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개별 이전기관으로 포함되었음.
- ◇ **조직 통폐합**] 효율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을 제외하고,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기관(12개 과/팀/그룹) 정원 14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통합시 신분이 변화하는 공무원은 구성원의 72%인 107명 수준임. “진흥원”의 행정부서는 각 기관들의 지원부서를 통폐합하고, 기술확산부서는 각 기관들의 조사·교육·훈련·기술이전 기능들을 통폐합하며, R&D부서는 정책연구, 핵심부품개발 등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검정부서는 ICT기자재검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 **정주여건**] 구성원 대부분은 1차로 수원의 1/2, 1/4 수준인 전주와 익산으로 이전하였고, 2차로 검토되는 영광은 정주여건이 전주의 1/15 수준으로 매우 열악함. 특히 학교/교통/주택/생활 부분에서 불리하여, 가족동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거주환경 측면에서는 수원과 정주여건 및 편의시설에서 우위에 있는 광주권(영광관내)의 검토가 필요함.
- ◇ **조정방안**] 기관 통폐합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방안으로서, 기관별 지원부서의 통폐합과 기술확산 목적의 신규부서로 산재한 전문인력 통합으로 R&D 정원(TO) 확보하며, R&D 관련 기존 7개 부서 연구원의 재편 및 충원에 의한 R&D 정원(TO)을 확보하여 정책연구 등 신규분야의 R&D를 확대하고, 검정 관련 기존 2개 부서 검정원의 재편 및 충원으로 검정 정원(TO)을 확대함.
- ◇ **사례분석**] 입지선정, 토지보상, 이주대책 및 주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등은 '03년부터 진행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기준으로 함.

제1절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 **조직의 통합(지원부서 포함)** 분산된 기관과 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담당업무”^{보고서 20쪽}에서 “**①**정책수립” 및 “**③**대농업인 보급” 기관은 통합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제외하고,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기관이 포함된 “**②**연구개발·실용화” 관련 기관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통합 대상 기관 : 3기관(12개 과·팀·그룹)
- ❖ 통합 대상 인원 : 148.5명(사업부서 130, 지원부서 18.5)
- ❖ 기관 평균 연봉 : 4,719.3만원

표 12. 통합 대상 기관의 사업부서/지원부서 및 현황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업무				
		기능	인원(명)	현소재지	평균연봉(만원)	설립년도(년차)
농촌진흥청	(지원부서)	행정	0.46)	전주	4,717 ⁷⁾	'62년(57년차)
	첨단농자재육성팀	조사	7*			
	교육훈련지원과	교육	9*			
산하 국립농업 과학원 농업공학부	(지원부서)	행정	11.88)			
	스마트팜개발과	R&D	79			
	에너지환경공학과					
	수확후관리공학과					
	재해예방공학과					
	발농업기계화연구팀					
농업인안전보건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지원부서)	행정	6.3 ⁹⁾	익산	4,538 ¹⁰⁾	'09년(10년차)
	농기계검정팀	검정	21			
	ICT기자재검정팀					
	기술창출이전팀	기술이전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기연")	(지원부서)	행정	0.0	11	김제	'89년(31년차)
	융복합농기계그룹	R&D	11			
3기관	12 과/팀/그룹	-	148.5	-	4,719.3	

* : 공개된 각 기관의 해당부서에서 농업기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타업무 중복인원 포함)을 추정하여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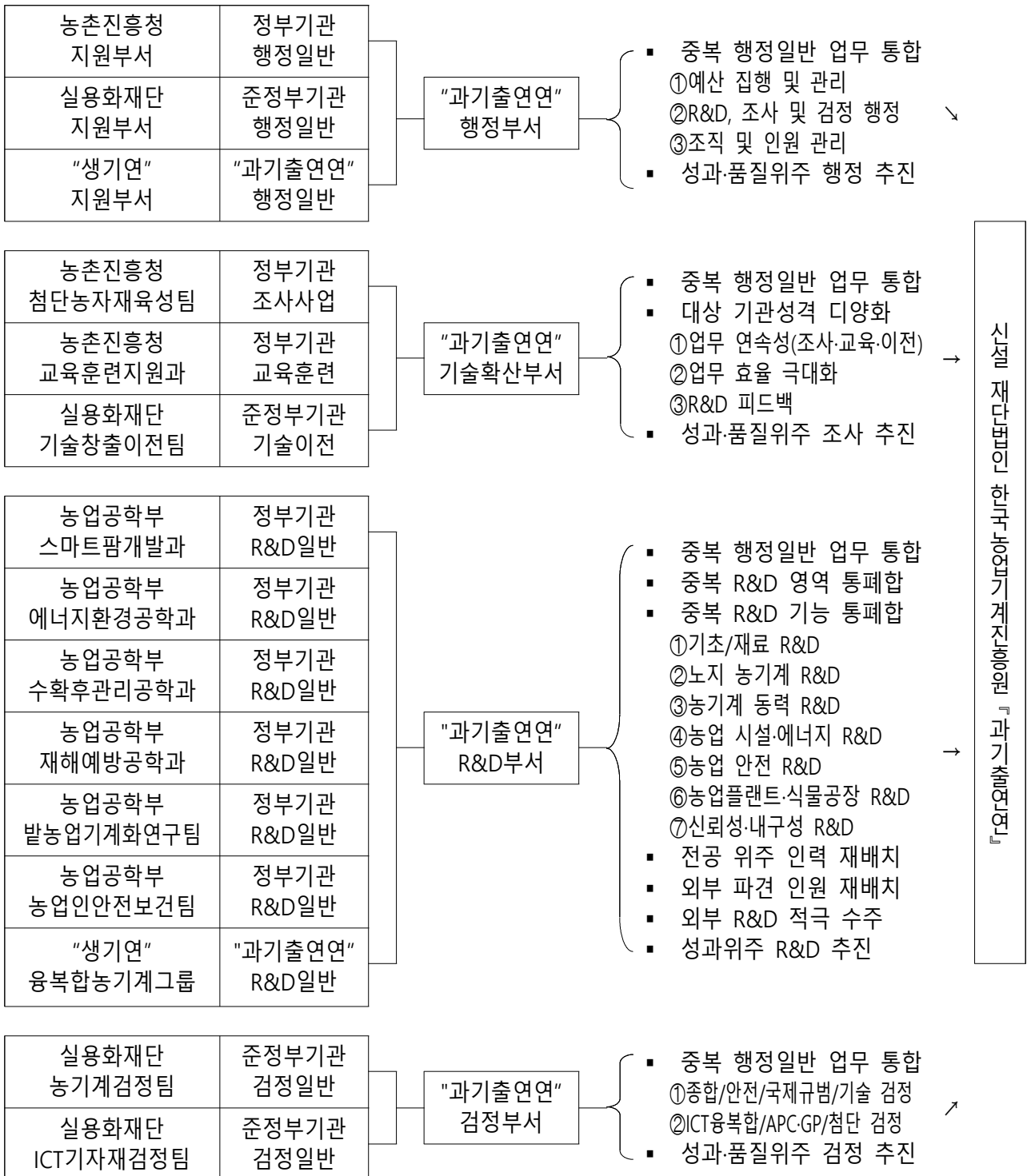
- 6) 농촌진흥청 기구표(20191220)에서 농촌진흥청 정원 1,875명에 대한 첨단농기자재육성팀/역량개발과 정원 16명 비율인 0.85%를 지원부서(운영지원과/감사담당관)에 51명에 대한 인원비로 0.4명을 구함.
- 7) '19년 인사혁신처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서 연구직공무원 월급여를 연구관 8호봉 3,463,100원, 연구사 15호봉 3,261,500원 기준, 연구관:연구사 비율을 30:70으로 전제하고, 연봉은 월급여에 14.2(정근수당/명절수당 포함)를 곱하여 산출함
- 8) 농촌진흥청 기구표(20191220)에서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520명에 대한 농업공학부 정원 79명의 비율인 15.19%를 국립농업과학원 지원부서 정원인 64명(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기술지원팀)에 대한 인원비로 9.7명을 구함. 또한 과 농촌진흥청 정원 1,875명(지원부서 정원 51명(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에 대한 농업공학부 정원 79명 비율인 4.2%를 지원부서(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원비로 2.1명을 구함.
-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원 223명에 대한 농기계검정팀/ICT기자재검정팀/기술창출이전팀 24명의 비율인 10.8%를 지원부서 정원 58명(기획운영본부)에 대한 인원비로 6.3명을 구함.
- 10) saramin. 2019. 기업정보_농업기술실용화재단_연봉정보_2018년 평균연봉
- 11) saramin. 2019. 기업정보_한국생산기술연구원_연봉정보_2018년 평균연봉

◇ **신분의 변화**] 법인설립과 통합시 신분이 변화하는 공무원(농업공학부)은 구성원 148.5명의 72%인 107.2명("생기연" 제외시 78%)임.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에 따른 신분보장과 다양한 혜택을 받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명문화된 자격 및 제도는 다음과 같음.

표 13.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자격 및 제도

구분	내용	비고
공무원	공채(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 경채(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인사기록
봉급제도	정무직은 고정급적연봉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1~5급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정, 재외공무원수당 지급 규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공무원 임용시험령,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무원의 범위에관한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 감사 규정, 직무분석규정)
수당제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육아휴직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총 14종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4종의 실비변상	
여비제도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가족여비, 이전비, 준비금	
성과평가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보수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일부를 누적	
연금제도	퇴직급여(5종), 유족급여(5종), 재해보상급여(8종), 부조급여(2종)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정부청사상담센터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사업 운영	
퇴직관리	퇴직 준비교육(공무원연금공단,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 전직지원 컨설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등을 운영	
재해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고,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 재해보상급여는 요양급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재해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보상금)이 있으며, 부조급여는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교육훈련	상시학습제도 직급별 교육훈련 현황 및 기본교육 훈련 현황 과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국내/국외)	
휴가 등	연가(3-21일)·병가(60일)·공가(180일)·특별휴가(사유별) 부여,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신청	
징계제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이며, 징계종류 6가지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경징계)감봉, 견책"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	
이 하 생 략		

◇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효율성의 제고방향은 “진흥원” 설립시 400명(정규직 150, 공무원·박사 후·석사후·기타 250) 규모의 조직운영에 맞춰 분산된 조직 및 인원을 행정·기술확산·R&D·검정으로 통합하여 업무 및 인원조정 필요함. “진흥원”의 행정부서는 각 기관들의 지원부서를 통폐합하고, 기술확산부서는 각 기관들의 조사·교육훈련·기술이전 기능들을 통폐합하며, R&D 부서는 골격을 유지하되 통폐합에 따른 정원확대로 연구영역을 확대(정책·부품·재료·플랜트·내구성 분야 등)하고, 검정부서는 ICT기자재검정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함.



◇ **기타, 정주여건 검토**] 공공기관 지방이전('18년 6월 기준)에서 가족과 함께 이주비율은 36% (미혼·독신 포함 62%) 수준임¹²⁾. 지방이전은 구성원과 가족들에게 환경의 변화를 주는데, 학교·교통·주택·생활에서 이전 소재지와 의 괴리감이 큼. 대부분 정주여건은 인구수와 비례하는데 1차로 구성원들은 수원의 1/2, 1/4 수준인 전주와 익산으로 이전하였고, 2차로 검토되는 영광은 정주여건이 전주의 1/2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함. 특히 학교·교통·주택·생활 부분에서 불리하여, 가족동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거주환경 측면에서는 수원과 정주여건 및 편의시설에서 우위에 있는 광주권(영광관내 남면/진원면)의 검토도 필요함.

표 14. “진흥원” 설립시 지자체별 정주여건

구분	수원시	전주시	익산시	영광군	광주광역시	비고	
인구	1,194,834 100%	655,054 54.8%	288,215 24.1%	54,774 4.6%	1,458,915 122.1%	명	
면적	121.01	205.53	506.54	473.69	501.24	km ²	
학교	유치원	195	117	80	15	312	개소
	초등학교	97	73	60	15	156	
	중학교	56	38	26	10	91	
	고등학교	44	29	18	6	67	
교통	고속버스	수원고속터미널	-	-	-	22	편도/day ·2019.12
	시외버스	수원시외터미널	13	-	-	-	
	KTX	-	17	43	-	25	
	SRT	-	-	22	-	22	
	비행기	-	-	-	-	38	
APT매매	15평	서둔화서동남(18평) 1.9	선번서신고을 1.7	모현주공2단지 0.73	녹사주공(20평) 1.0	쌍암에이엠시티4차 0.82	억원
	25평	고등동 동은 2.3	만성NH퍼스트리움 2.6	평화동 클래식 1.5	대성스카이3차(25평) 1.2	월계첨단우미2(27평) 1.9	
	32평	탑동삼성 2.6	혁신도시에코르1단지 2.5	모현현대2차 1.7	-	첨단5차호반리젠시빌 2.4	
	34평	서수원울트라참누리 2.8	장동호반베르디움C5 3.4	송학동익산더샵 2.7	동우아스트로(33평) 2.1	월계동 첨단모아 2.6	
	43평	꽃피양지마을대우(44평) 4.9	혁신도시대방디엠시티 4.0	어양GS자이(47평) 3.7	-	첨단지아1차(50평) 5.1	
역간거리	수원	-	176.3	169.4	-	269.4	km
	전주	176.3	-	27.8	-	107.7	
	익산	169.4	27.8	-	-	108.2	
	영광	-	-	-	-	-	
	광주	269.4	107.7	108.2	-	-	
시장(1314)	홈플러스	5	3	1	-	3	개
	이마트	2	1	1	-	5	
	롯데마트	4	3	1	-	4	
	재래시장	6	5	6	3	5	
정주	우체국	12	20	29	11	27	개소
	소방서	6	8	8	3	5	
	파출소	23	18	19	8	40	

12) 시사저널_1575호. 20191221. '기사_균형발전 전략' 근본적 재검토 없인 '약순환 반복'

13) <https://www.tiendeo.co.kr/>

14) <https://www.google.com/>

제2절 합리적인 조정 방안 제시

◇ **업무분장** 분산된 기능을 조직 통합으로 재편하는 것은 기존 수행업무의 재배치, 즉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분장을 의미함. 조직 통합은 지원부서 통합(행정①~④)으로 감축된 정원을 정책지원연구, 핵심부품 R&D 정원으로 확대하고, 외부파견 등 필요에 따라 가감된 R&D 각 부서의 정원을 재배치(R&D①~⑦)하여, 부서별로 효율적인 연구계획수립·연구수행·목표달성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R&D⑦_융복합농기계그룹"은 과기부 소속 "출연연"으로 통합의사 확인 필요함). 또한 검정 정원의 부분적 확대 및 재배치로 확대되는 ICT기자재 검정수요를 담당(검정①,②)토록 함. 그리고 업무흐름이 있는 부서(기술확산①~③)를 통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 ❖ 기관별 지원부서 통폐합으로 R&D 정원(TO) 확보하고,
- ❖ 기술확산 목적의 신규부서로 산재한 전문인력 통합으로 R&D 정원(TO) 확보하며,
- ❖ R&D 관련, 기존 7개 부서 연구원의 재편 및 충원으로 R&D 정원(TO) 확대하고,
- ❖ 검정 관련, 기존 2개 부서 검정원의 재편 및 충원으로 검정 정원(TO) 확대함.

표 15. "진흥원" 설립시 업무 조정 방안(안)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업무							
		현재		조정 내용	"진흥원"				
		기능	인원(명)		인원(명)	기능			
농촌진흥청	(지원부서)	행정①	0.4	18.5(행정①+②+③) → 27	27	정책연구본부			
	첨단농자재육성팀	조사①	7*						
	교육훈련지원과	교육②	9*						
산하 국립농업 과학원 농업공학부	(지원부서)	행정②	11.8	19(조사①+교육②+기술③) → 12	12	기술확산본부			
	스마트팜개발과	R&D①	20						
	에너지환경공학과	R&D②	13						
	수확후관리공학과	R&D③	14						
	재해예방공학과	R&D④	11						
	발농업기계화연구팀	R&D⑤	11						
	농업인안전보건팀	R&D⑥	1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행정③	6.3				90(R&D①~⑦) → 60(R&D) + 25(부품)	60	기술개발본부
	농기계검정팀	검정①	13						
	ICT기자재검정팀	검정②	8						
기술창출이전팀	기술이전③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기연")	(지원부서)	행정④	0.0	검정 21→24	24	기술검정본부			
	융복합농기계그룹	R&D⑦	11						
3기관	12 과/팀/그룹	-	148.5		148	4본부 1센터			

* : 공개된 각 기관의 해당부서에서 농업기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타업무 중복인원 포함)을 추정하여 산정

◇ **입지선정** 지역 및 지역 내에서 입지선정은 과거 지방이전 사례를 참조하면,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¹⁵)에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둬. “입지선정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인근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로 구성함. “입지선정위원회”는 “선정지침_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지 평가를 실시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정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후보지평가세부기준을 작성하여 후보지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¹⁶⁾」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6.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분	분야별		주요 내용
	항목	배점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용이성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용이성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 시설 활용가능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가능성 편익시설 활용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택지 등 기개발지의 활용가능성 관련법령에 의한 개발제한여부 등 토지확보의 용이성 도로,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지가의 적정성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 개발 가능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가능성
지역 내 동반성장	지역 내 균형발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균형발전 가능성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 이익과 성과공유계획
	지자체의 지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자체의 지원계획
총점		100점	-

※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상기 분야별 항목배점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과거 혁신도시 보상추진¹⁷⁾은 신속성, 실효성, 형평성 등 3대 원칙 하에 추진되었음. 또한 토지 등 보상은 ①보상체계구축, ②보상준비, ③보상시행 등 3단계별 추진방안에 따라 이루어짐. 혁신도시법 발효이전의 1/2단계와 발효후의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음.

15) 건설교통부. 2005.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drLu7KPKrf4J:www.korea.kr/common/download.do%3FfileId%3D75299734+%&cd=1&hl=ko&ct=clnk&gl=kr>)

16) 국토교통부.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 (2003~2015)

17) 국토교통부.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 (2003~2015)

- ❖ 1단계 : 보상체계구축 단계('06.12) : 사업시행자, 지자체, 보상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보상전담 T/F팀 구성. 보상단계별 인력 배치 계획 수립, 보상추진 시나리오별 자원조달 방안 사전검토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보상추진 노력과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됨.
- ❖ 2단계 : 보상준비 단계('06.12~'07.4) : 보상전담 T/F팀 운영, 토지·물건조서 작성(사업시행자/지자체 지원), 혁신도시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책 강구(건설교통부/사업시행자 등), 「혁신도시법」 시행과 동시에 보상절차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세부 절차 및 준비활동들이 진행됨. 특히, 주민설명회 개최(집단설명회/마을단위별 설명회 등), 보상절차, 보상내용, 평가기준 등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주민 설문조사 의견 수렴 및 이주대책 등 수립착수, 보상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센터 운영됨.
- ❖ 3단계 : 보상시행 단계('07.5~) :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사업시행자) 및 토지·물건조서 등의 열람(시군구), 보상협의회 본격 가동(지자체), 토지 등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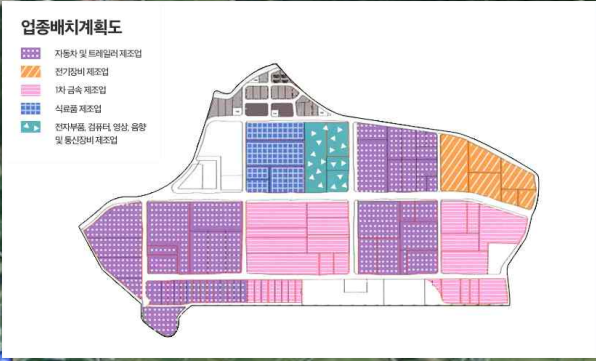
◇ **주민대책위원회** 또한, 과거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구조정, 세제해택, 임대아파트 입주, 기타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 다음은 전국의 각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가 사업 추진시 요구한 주요 요구사항¹⁸⁾은 대표적으로,

- ①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부과 및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 ②이주자 택지 공급규모 확대 및 공급가격 인하
- ③선이주 후 철거를 위한 사업기간 중 인근지역 임대 아파트 무상입주
- ④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 우선취업, 경로복지관 건립 및 무상입주
- ⑤개발제한구역 즉시 해제 및 정당한 보상
- ⑥집단 이주단지 조성 및 축산 폐업보상
- ⑦그린벨트 내 임야 중 농지이용 토지에 대한 현황 보상
- ⑧시설재배, 버섯재배사 이전시 시설보조사업 등 우선지원
- ⑨고향관을 건립 및 실버타운 시설 설치
- ⑩주변지역 개발제한 완화 및 개발이익금의 주민환원
- ⑪편입공장의 공단 대체부지 조성
- ⑫이주·생활대책의 선제시 등으로 정리됨.

18) 국토교통부.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 (2003~2015)



영광대마일반산단지
 (업종: 전기자동차)
 (분양가 119천원/m²/75%분양)
 분양대상면적: 109.4만m²



국도 22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군 시가지

그림 2. 광주권 영광관내 “진흥원” 입지(안)

제3절 시사점

- ◇ **조직통합**] “진흥원” 설립은 “과기출연연”, “기타공공기관” 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의 조직통합을 의미함. 통합되는 조직의 구성원은 148명으로 현재의 신분인 공무원 107명(72.3%), 준정부기관원 30명(20.3%) 및 과기출연연 연구원 11명(7.4%)에서 전원 “과기출연연”으로의 변화를 의미함. 절대다수인 공무원(농업공학부)은 기 1차 지방이전을 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신분보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 및 대책 검토가 필요함.
- ◇ **업무분장**] “진흥원 설립시 400명(정규직 150, 공무직·박사후·석사후·기타 250) 규모의 조직운영에 맞춰 분산된 조직 및 인원을 행정·기술확산·R&D·검정으로 통합하여 업무 및 인원조정 필요함. 각 기관들의 행정부서를 통폐합하고, 기술확산부서는 조사·교육훈련·기술이전 기능들을 통폐합하며, R&D부서는 통폐합에 따른 정원 확대로 연구영역을 확대(정책·핵심부품·재료·플랜트·내구성)하고, 검정부서는 ICT기자재검정을 확대함.
- ◇ **입지선정**] 과거 지방이전 사례를 참조하면,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선정지침”을 두고,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20인 이내)”에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후보지 평가 세부기준은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기존도시 인프라·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도시개발의 용이성·경제성·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지역 내 균형발전·성과공유방안·지자체의 지원”을 포함함.
- ◇ **시사점**] 공공기관 지방이전(‘18년 6월 기준)에서 가족과 함께 이주비율은 36%(미혼·독신 포함 62%) 수준임. 정주여건은 인구수와 비례하는데, 영광은 정주여건이 전주의 1/2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데, 특히 학교·교통·주택·생활 부분에서 불리하여, 가족동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거주환경 측면에서는 수원, 전주와 정주여건 및 편의시설에서 우위에 있는 광주권 혹은 전주권에서의 이전 혹은 확대재편 검토가 필요함.

CH IV. “진흥원” 설립시 운영방안

제1절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운영방안 설계

제2절 소요비용 및 자원 총당방안 등 제시

제3절 시사점

CH IV.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운영방안 설계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운영방안 설계

- “진흥원”은 농업기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책실행의 도구로 계획됨
- “진흥원”은 11과, 인원 400명(정규직 150, 공무원·박사·석사후 등 250) 규모임
- “진흥원”은 총사업비 965.9억원, 운영유지비 869.3억원, 연구관리비 238.7억원 소요됨
- 경제성분석에서 “편익/비용 비율”과 “순편익 내부수익률(IRR)”은 산출되지 않음
“순편익의 현재가치(NPV)”는 △1,087.5억원 산출(운영유지비 제외 △696억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활동은 문제 정의, 세부내용 구성, 자원 배분, 기획 과정 설계로 구분됨. 여기서, ❶ 문제 정의는 필요성 및 추진 당위성의 근거 도출, ❷ 세부내용 구성은 세부연구내용 기획 및 ❸ 기획과정 설계는 절차(혹은 방법론) 결정하는 기획임. 정책실행의 도구로서 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정을 정리¹⁹⁾”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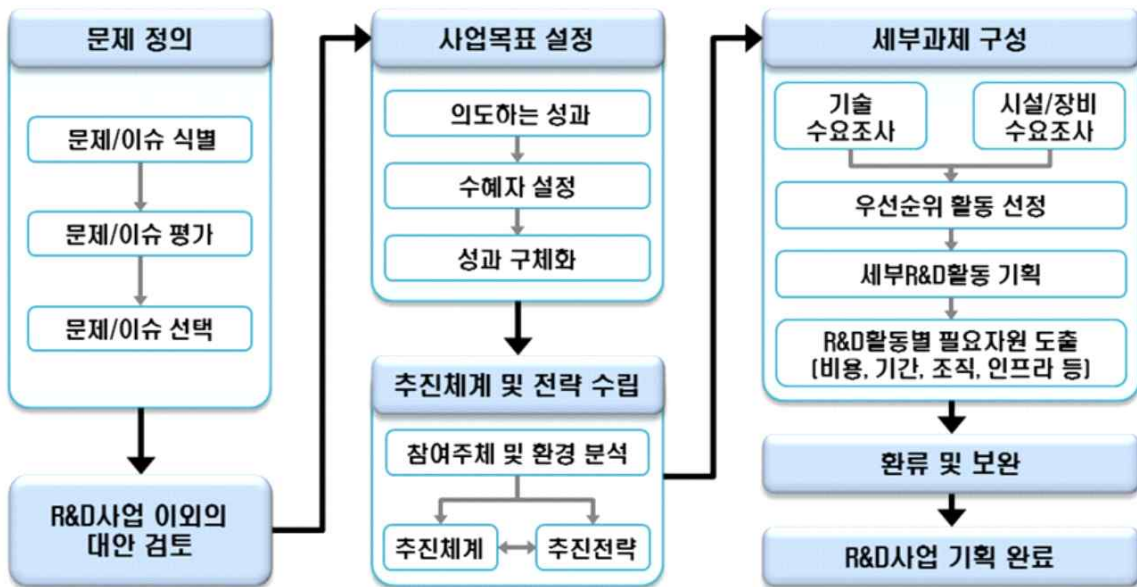


그림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정(예시)

◇ **“진흥원” 추진** “진흥원” 추진은 효율적인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농업기계와 관련 분산된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여 정책당국에서 추진하는 논농업 농업기계 화율 유지,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 관련 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함임. 연구 개발사업의 재원은 중앙정부 국비,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민간참여자 민자로 구분되는데, “진흥원” 추진은 “재)출연연” 설립으로 사업비는 국비를 기준함.

1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제1절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운영방안 설계

- ◇ **R&D 사이클 설계**] 설립되는 “진흥원”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수립, R&D, 교육훈련, 검정 등 조직과 인원을 통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함.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부서, 연구기관, 산업체 및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정책수립·연구개발·기술이전·교육훈련·농기계검정 등 전과정에서 순환 피드-백 운영사이클을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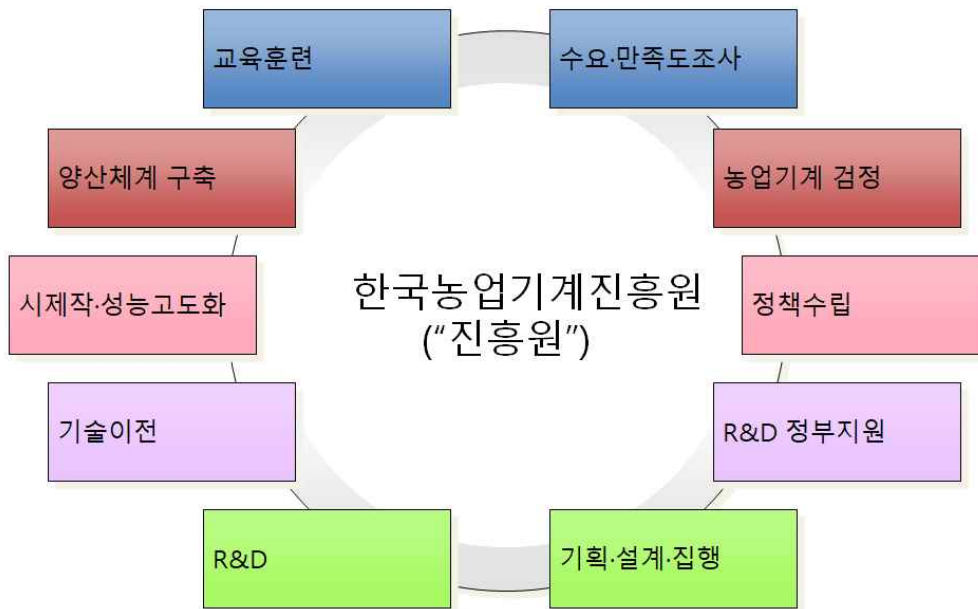


그림 4. “진흥원” 운영 사이클

- ◇ **출연연 운영방안**] 설립되는 “진흥원”은 농업기계화 추진관련 R&D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으로 “과기출연기관법”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²⁰⁾”의 산업기술연구로 분류되고, “임무중심형 평가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출연연”은 선진국의 과학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이 시초임. '14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기술 연구회와 산업기술 연구회를 통합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25개 “출연연”이 소속^{보고서 25쪽}되어 있음. 그리고 '15년 R&D 혁신방안으로 “출연연”을 산업기술연구, 대형·공공연구, 기초·원천연구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예산 지원구조를 차별화하였음. 또한, '1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이후에는 기존의 평가제도의 유지(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등급한도 배제 절대평가) 및 임무중심형 평가제도(“출연연” 자율·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고유임무를 기관장 임기와 연계한 평가제도)가 도입됨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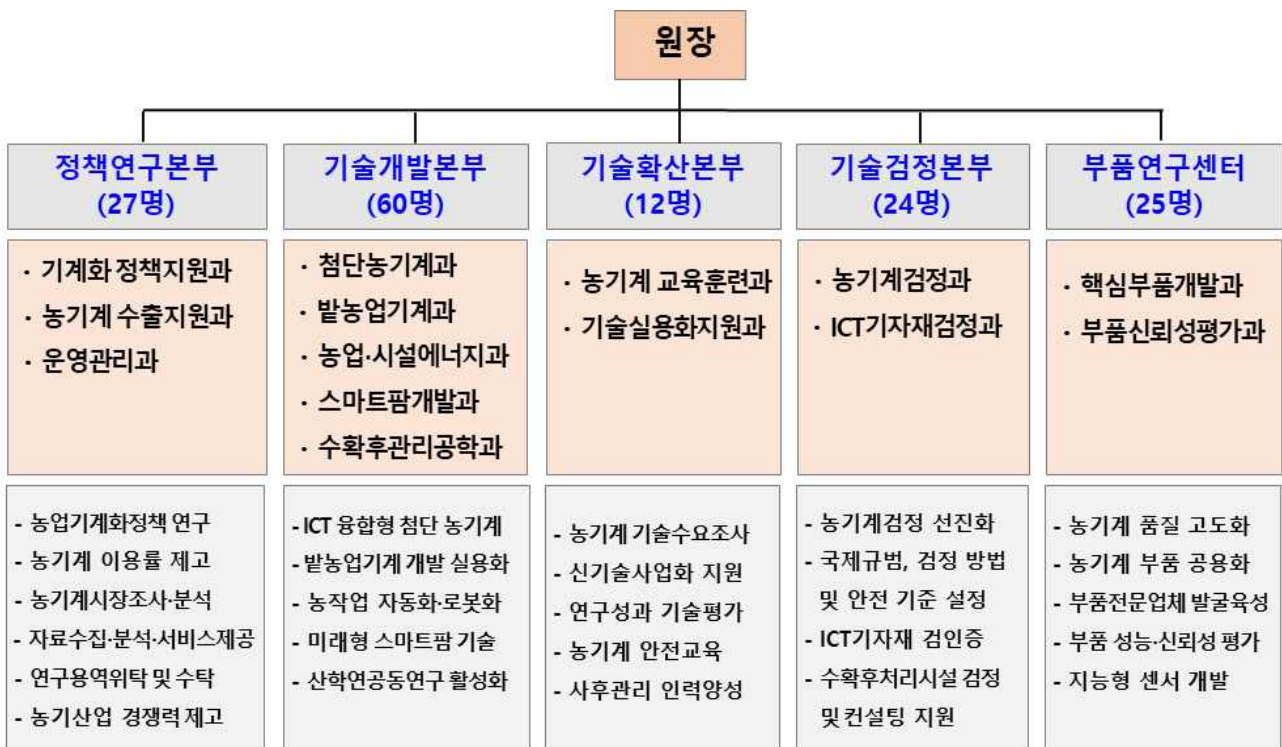
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https://www.nst.re.kr/nst/index.jsp>)

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5. 정부출연(연)의 미래대응역량지수 개발 연구

◇ **조직 및 인력 배치**] “진흥원” 설립은 “과기출연기관법”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대통령직속, 위원장: 장관급)”의 평가대상이고, 통칭 “출연연” 설립을 의미함. “진흥원”은 분산된 농업기계 관련 조직과 인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농업기계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총괄 조직으로 출범하는데, 진흥원장 휘하 4본부 1센터 400명(정규직 150, 공무원·박사후·석사후·기타 250) 규모로 운영함.

- ❖ 조직 : 과학기술계(농업기계 R&D) “출연연” 또는 농식품부 기타공공기관
- ❖ 목적 : 농업기계 정책 및 R&D 성과 극대화를 통한 농업기계화율 향상 및 산업 활성화
- ❖ 운영 : 4본부 1센터 14과 정원 148명

표 17. “진흥원” 조직 및 인력구성(안)



*: 기본적으로 “진흥원”의 설립은 “경쟁”과 “선택”을 의미하며, 한국 농업기계 R&D 65년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함. 따라서 조직내 부서명 및 인원배치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함.

◇ **“출연연” 기관평가 대응**] 과학기술계 “출연연” 25개 기관평가는 ‘91년부터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운영체제의 변경 등 기관발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실시됨. 이후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출연연” 평가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 ❖ ‘91년 : 국무총리실 주관 22개 출연연 합동평가, 일부 출연연 기능 통폐합
- ❖ ‘93~‘95년 : 매년 기관평가 실시, 연구성과 기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 ❖ ‘96~‘97년 : 3단계 기관평가실시, 정부 자체평가시스템 평가 실시, 3년 단위 전략성 평가

- ❖ '96년 : 외국계 컨설팅 기관의 경영진단 실시
- ❖ '99~'04년 : 연구회체제하 기관평가 특성화, 평가결과의 예산연계
- ❖ '05년 : 성과기반 관리체계, 기관별 특성 고려
- ❖ '06년 : 평가주기 변경(경영성과 1년, 연구사업 3년, 기관종합평가 3년), 연구사업성과 절대평가 및 예산편성 연계 강화, 컨설팅 중심의 기관종합평가 신설
- ❖ '10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주체, 기관평가는 절대평가, 일률적용 평가지표 축소, 자율지표 비중 20% 이내 확대
- ❖ '14년 : 임무중심형 평가와 기존 평가제도 운영 등이 대표적²²⁾이며,

선행연구자²³⁾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미래대응역량 측정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18. 과학기술계 “출연연” 미래대응역량 지수 최종 측정지표

차원	하위지표	최하위지표
전략적 리더십	동기부여와 지원	①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미래지향적 비전 달성 노력 권장, ②미래지향적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환경변화에 대한 관심	①미래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관의 혁신 강조
R&D 프로세스	기획 영역	①미래예측 방법론에 기반한 기관의 비전 및 상위목표 설정, ②중(3~5년), 장기(10년 이상)적 전략 수립, ③미래지향적 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 투입
	연구환경 영역	①조직차원의 미래대응 관련 정보 공유, ②연구책임자의 자율적 연구 권한, ③미래대응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평가 영역	①연구특성에 맞는 합리적 평가지표 구성, ②미래대응을 위한 점검 및 평가의 주기적 실시, ③연구수행기간을 고려한 평가시스템 구축
지식경영	지식생산	①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주기적 동향 분석, ②미래유망기술과 관련된 지식의 축적
	지식저장	①지식기반의 미래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인력 구축, ②지식축적과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③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지식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지식공유 및 활용	①대학 및 기업 등과의 연구 교류 및 공동 워크샵 개최, ②미래예측방법론을 통한 지식 관리 및 활용, ③선진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의 분석 및 활용
기업가 정신	구성원 인식	①기관의 미래대응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지, ②추종적 연구보다는 선도적 연구의 선호도, ③미래 관련 연구 및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 및 이해도
	조직 문화	①미래연구와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②새로운 기술적 문제접근법의 시도, ③구성원 개인의 연구 자율성 보장

22) 박소희, 김승태, 김남희, “과학기술분야 출연기관평가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발표논문집, pp. 1-17, 2008. & 2012 출연연 기관평가 편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5. 정부출연(연)의 미래대응역량지수 개발 연구

2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5. 정부출연(연)의 미래대응역량지수 개발 연구

제2절 소요비용 및 재원 증당방안 등 제시

- ◇ **이전 대상 기관** 기관이전에 따른 “진흥원” 설립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농진청(전주)의 첨단농기자재육성팀·역량개발과 농업기계 관련 일부와 농업공학부, 농진청 산하 준정부기관인 “실용화재단(익산)” 농기계 검정·기술이전 관련 일부, “생기연(김제)” 농업기계 관련 일부 등 3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관의 성격 및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19. 이전 기관(예상)의 성격 및 현황

기관명	구분 ²⁴⁾	성격	규모
농촌진흥청	정 부 기 관	연구개발	5과 3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준정부기관	실 용 화	3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기출연연	연구개발	1그룹

- ◇ **비용 분석(총괄)** 예타 기준으로 비용을 분석하면, 연구시설은 건설기간 총사업비(①-①,②,③,④,⑤)와 건설후 30년간의 운영유지비(①-⑥) 및 건설후 연구관리비(②-①,②,③,④)로 대별됨. 산출결과, 총사업비 965.9억원, 연구관리비 238.7억원으로 산출됐는데, 다음과 같음.

- ❖ 총사업비 : 965.9억원(건설기간 3년)
- ❖ 운영유지비 : 869.3억원(총사업비의 3%, 건설후 30년 합)
- ❖ 연구관리비 : 238.7억원(건설후 매년)

표 20. “진흥원” 구축을 위한 비용분석 내역(총괄)

성격	분류	비용	비고	
① 연구시설	총사업비	①용지보상비	324.5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기준
		②건축공사비	493.6	기관별 1차 지방이전비 대입
		③장비구축·구입비	30	검정시설 추정가 산정
		④시설부대경비	30	실험시설 추정가 산정
		⑤예비비((①+...+④)*10%*3년)	87.81	건설기간 3년, 10% 산정
	계	965.9	-	
	⑥운영유지비((①+...+⑤)*3%*30년)	869.3	총사업비의 3%, 분석기간 30년	
	합(①+...+⑥)	1,835.2	-	
② 연구관리(년)	①과제 관리·평가	3.0	200회, 5명, 30만원/인	
	②인건비	69.9	148명, 평균연봉 4719.3만원	
	③경상운영비	158.8	'19년 농공부 인건비 비율 외 69.4% 적용	
	④기타((①+②+③)*3%)	6.95	(①+②+③)의 3%	
	합(①+...+④)	238.7	-	

24) 농촌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농촌진흥청 제1/2/3/5장, 실용화재단 제4장)

◇ **재원 총당방안** '18년 영광군의 재정자립도(결산)²⁵⁾는 21.57%(동종단체 평균 23.31%)인데, 세입결산 7,277억원, 세출결산 5,767억원임. 운영유지비 제외 상태에서 이전비용은 1,157.1억원으로, 영광군 '18년 세입/세출(결산)의 15.9%/20.1% 규모임. 이전에 따른 재원총당은 부동산 매각이 현실적인데, 실용화재단은 지방이전한지 1년 밖에 안됐고, 농업공학부와 실용화재단 부지는 모두 토지용도가 연구시설로 매각이 어려움. 또한 1차 지방이전시 전북 이전 기관들의 평균 보유자금 및 외부차입금은 총이전비용의 19.3%²⁶⁾ 수준이었으나, 금번 이전 기관은 없는 것을 전제함.

◇ **용지 조성원가** '15년 기준으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평균 조성원가는 152.3만원/3.3m²임. 이는 전북에서 분양 중인 일반산업단지 최고가인 정읍첨단 50.5만원/3.3m²의 3배, 담양일반 49.4만원/3.3m²의 3.1배 수준임. 따라서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에 나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수준의 이전부지(315,000m²)를 조성하려면 1,107.3억원, 담양일반산업단지 수준의 이전부지(315,000m²)를 조성하려면 471.5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됨. 전국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조성원가는 다음과 같음.

표 21.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조성원가('15.03 기준, 만원/3.3m²)²⁷⁾

구분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평균
조성원가	195	116	251	136	83	142	129	176	143	152.3

◇ **건축비용** "진흥원" 설립에 따른 청사동 및 부속동 등의 건축물 건설비용 추정은 "농업공학부(전북/전주)"와 "실용화재단(전북/익산)"의 '08년과 '17년의 지방이전(경기/수원에서 전북/전주 및 전북/익산으로) 건축비용에 근거하고, '18년 기준으로 건설비용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총 553.6억 원이 산출됐는데 다음과 같음.

표 22. 이전에 따른 기관별 건축비 소요비용(단위 : 억원)

기관명	건설비	장비구축 부대시설	합 계	구성비 (%)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280 ²⁸⁾	30	310	56.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13.6 ²⁹⁾	30	243.6	44.0%
합 계	493.6	60	553.6	100%
	89.2%	10.8%	100%	-

25)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고시스템. 2019. 영광군 재정자립도(결산) 23.32%(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state/sd002_tg003.xml)

26) 국토교통부. 2013.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현황

27) 국토교통부. 2015.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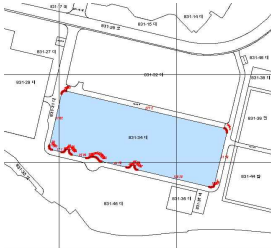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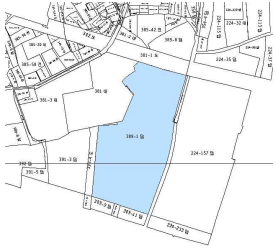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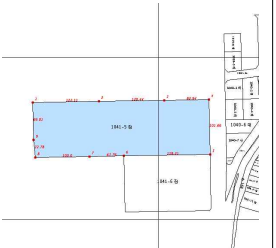
28) '08년 농촌진흥청 지방이전 사업비 5,346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2,235억원을 제외하고, 농과원 사업비를 30%로 추정하고, 이 중에서 농업공학부 사업비를 30%로 추정하여 반영하면, 농업공학부 관련 이전예산은 280억원으로 산출됨

29) '17년 실용화재단 수원에서 익산으로의 지방이전사업비 중에서 농기계 관련된 분석시험센터 및 농기계검정센터 사업비 213.6억원을 적용함

◇ **이전비용 확보**] 종전부동산 매각시기를 분산·조정하여 집중매각으로 인한 저가 매각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등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함. 농업공학부 매각대금은 청사신축 등 이전비로 지출하고, 실용화재단 매각대금은 개별기관 이전비로 활용하고 부족시 자체적으로 조달함. 농업공학부 부지³⁰⁾의 공시지가는 587,600원/m², 실용화재단_검정팀 부지³¹⁾는 110,900원/m² 수준임. 이전 대상 2기관의 부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636.4억원(농업공학부 1,586.5, 실용화재단 49.9)임. 이는 영광의 이전부지(안)가격 324.5억원을 5배 상회함. 그러나 농업공학부와 실용화재단_검정팀 모두 소속기관 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부지용도가 연구시설로 제한되어 타 용도 사용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매각을 통한 이전비용 조달은 어려움. 이전 대상 농업공학부와 실용화재단_검정팀 2기관의 현재 점용 부지면적 315,000m²에 대한 가격 추정은,

- ❖ 농업공학부, 실용화재단 부지가격 : 1,636.4억원(공시지가)
- ❖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기준 : 324.5억원(공시지가)
- ❖ 나주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기준 : 1,107.3억원(조성원가)
- ❖ 담양일반산업단지 기준 : 471.5억원(분양가)으로 산출됨.

표 23.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부동산가격(건축물 제외) 추정

구분	농업공학부	실용화재단	영광대마 일반산업단지	비고
부지면적(m ²)	270,000	45,000	315,000 ³²⁾	100%
공시지가(원/m ²)	587,600	110,900	103,000	'19.05.31.
토지가격(원)	158,652,000,000	4,990,500,000	32,445,000,000	공시지가 기준
	163,642,500,000			
지적도				None Scale
지번	전주 덕진 중동 831-34	익산 송학 389-1	영광 대마 송죽 1041-5	
토지용도 ³³⁾	연구시설	연구시설	일반공업지역	

30) 농업공학부 부지(전북 전주 덕진 중동 831-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전북전주 완주혁신도시), 연구시설(국립농업과학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연구개발특구(2017-02-0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성숙에관한특별법>)

31) 실용화재단 부지(전북 익산 송학 38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농업기술실용화재단(접합), 연구시설(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현재 전주시 농업공학부 규모인 270,000m²에 대해 영광군내 임의 지점인 “영광대마산업단지_송죽리 1041-5번지”를 이전부지로 가정하여 '19년 5월 공시지가 103,000원/m² 적용하여 산출함. 현재 익산시 실용화재단 농기계부부 규모인 45,000m²에 대해 영광군내 임의 지점인 “영광대마산업단지_송죽리 1041-5번지”를 이전부지로 가정하여 '19년 5월 공시지가 103,000원/m² 적용하여 산출

◇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추진** 사업은 국가재정법³⁴⁾에서 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으로 “예타” 대상임. “예타” 결과는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종합적 고려함. 경제성분석은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준(B/C비율: 1 이상)하고, 정책적분석은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 평가 항목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함. 종합적으로 “예타”는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수치화(AHP: 0.5 이상)하며, 일반적인 “예타” 수행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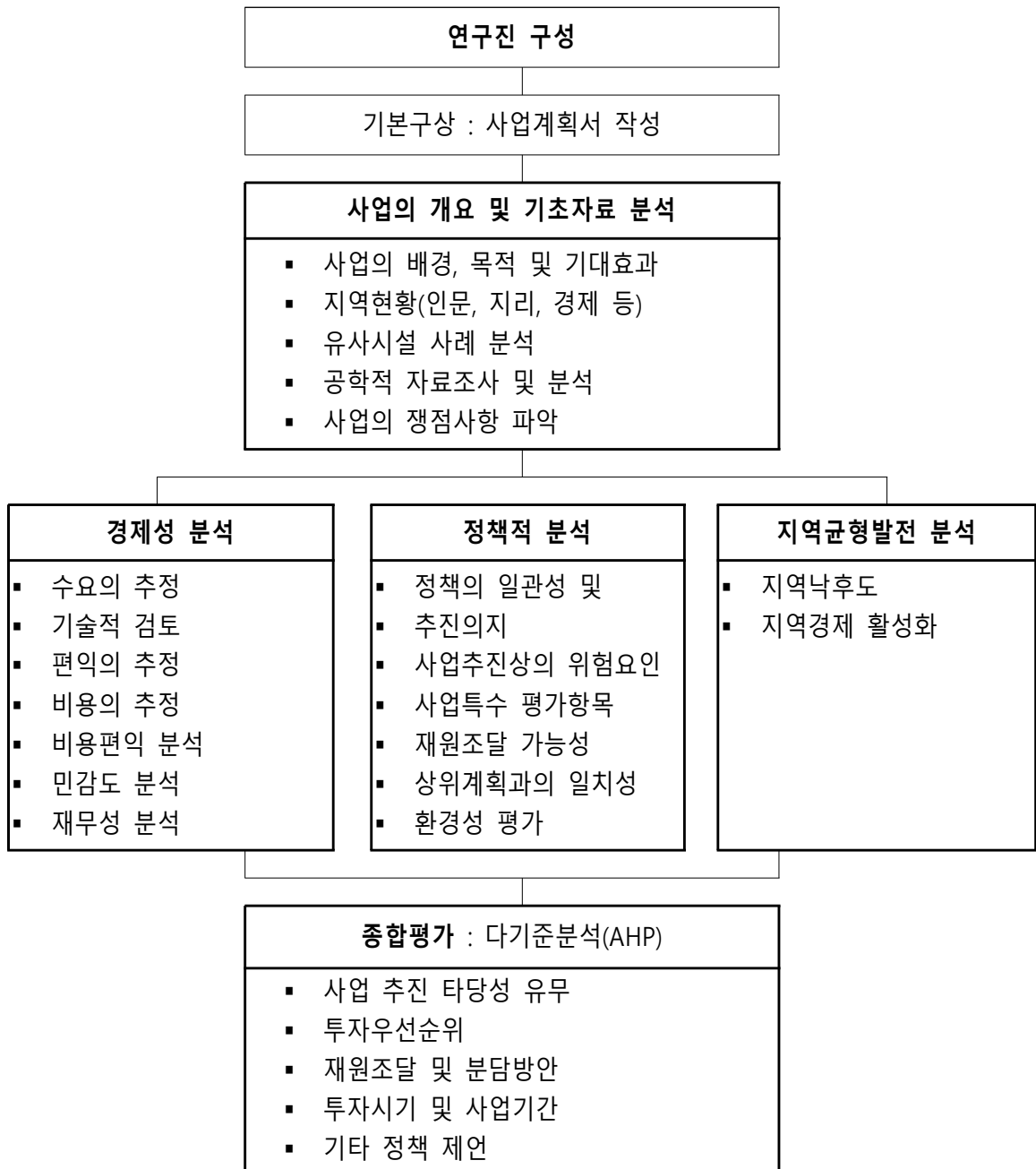


그림 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34) 기획재정부. 201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분석 방법” ”’16년 농해수위 검토의견서³⁵⁾” 상에 재정소요 180.4억원은 규모상 기관의 이전비용 및 토지매수비가 포함되었다 보기 어려움. 토지매수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하 “예타 운용지침”)”에 준해 총사업비에 포함됨. 현재의 농업공학부와 실용화재단의 부지규모로 토지매수비를 영광군 임의지점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용함. 기관별 전남/영광 이전비용은 ‘08년 농업공학부 지방이전비용(수원→전주)과 ‘17년 실용화재단의 지방이전비용(수원→익산)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18년 기준으로 산출함. 산출된 총사업비는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서 농림해양수산부분 예비타당성의 대상 사업에 포함됨. 또한, 경제성분석을 위한 주요 전제는,



좌측; 농업공학부(전북/전주), 우측; 실용화재단(전북/익산)

그림 6. 이전 기관의 현재 부지 위성사진(Daum map, 2019)

- 1) 토지매수비는 “진흥원” 설립부지로 군내 임의의 위치인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_송죽리 1 041-5번지”를 이전부지로 가정, 개별공시지가(‘19.05, 103,000원/m²)로 산출함.
- 2) 부지면적은 현 시설면적인 농업공학부, 270,000m², 실용화재단 45,000m²을 기준함.
- 3) 운영비는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6조(총사업비의 정의)_2.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_시설 건설 이후의 연구비, 운영비 등 총사업비에서 제외”에 준해 산정하지 않음.
- 4) 경제성분석 기간 30년,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한, 순현재가치(NPV) 및 내부수익률(IR R)은 다음의 수식을 기준함.

$$\text{NPV} = \sum_{t=1}^n \frac{C_t}{(1+r)^t} - C_0$$

$$\text{IRR} = \sum_{t=1}^n \frac{C_t}{(1+r)^t} = 0, \text{ 치환하여 } r=(x\%) \text{ 산출}$$

where, n =경제성분석 기간, r =사회적 할인율, $C_t=t$ 시점 현금흐름,

C_0 =현재시점 투자액

3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11.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업기계진흥원을 설립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18년 35억 7,400만원, ‘22년 37억 5,200만원 등 ‘18년에서 ‘22년까지 5년간 총 180억 3,800만원(연평균 36억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의 비용추계의 합을 공사비로 가정하고, 분석년도를 ‘16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며, 재정투입 기준년도를 ‘18년에서 ‘23년으로 수정 및 기준하여 재산정

◇ “에타” 기준 경제성분석] “에비타당성 운용지침” 기준으로 농업기계 R&D관련 조직이전(총원 148명)을 전재함. 분석에서 편익/비용 비율이 1 이상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진흥원” 설립 경제성분석에서 “편익/비용 비율”과 “순편익 내부수익률(IRR)”이 산출되지 않음. 또한, 편익이 없는 상태에서 “순편익의 현재가치(NPV)”는 △1,087.5억원으로 산출됨(또한, 같은 조건에서 경제성분석 30년 운영유지비 869.3억원을 제외하면, NPV는 △696억원으로 산출됨). 여기에서 “의안_2328, 일부개정법률안”은 “진흥원” 설립목적은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 공공목적으로 편익 산정이 어려운 사업으로 분석됨.

표 24. “진흥원” 설립에 따른 경제성 분석(단위: 억원, 토지매수비: 영광대마산업단지 기준)

재정소요(안)		비용		편익 (원/인)
구성	건설비	총사업비 (건설기간/3년)	운영유지비 (분석기간/30년)	
“진흥원” 설립	553.6	재정 878.1억원의 10%를 예비비로 포함하여, 건설기간 3년 동안 965.9억원, 매년 321.97억원 발생 추정	총사업비 965.9억원의 3%를 운영비로 하여, 경제성분석 기간 30년 동안 매년 28.98억원, 총 869.3억원 발생 추정	제외
토지매수비	324.5	-	-	-
합계	878.1	965.9	869.3	-
			1,835.2	

표 25. “진흥원” 설립에 따른 연차별 경제성분석(단위: 억원)

구분	비용	비용의 현재가치	편익	편익의 현재가치	순편익	순편익의 현재가치	
건설기간	2023	321.97	270.0	0	0	-321.97	-270
	2024	321.97	258.4	0	0	-321.97	-258.4
	2025	321.97	247.2	0	0	-321.97	-247.2
경제성 분석기간	2026	28.98	21.3	0	0	-28.98	-21.3
	2027	28.98	20.4	0	0	-28.98	-20.4
	2028	28.98	19.5	0	0	-28.98	-19.5
	2029	28.98	18.7	0	0	-28.98	-18.7
	~~~~~						
	2052	28.98	8.1	0	0	-28.98	-8.1
	2053	28.98	7.7	0	0	-28.98	-7.7
	2054	28.98	7.4	0	0	-28.98	-7.4
	2055	-324.5	-79.3	0	0	324.5	79.3
합계	1,482	1,088	0	0	-1,481.8	-1,087.5	

◇ **“진흥원_부품연구센터”(종합)** “진흥원” 설립에서 주요 조직구성으로 농기계 부품연구센터 (이하 “센터”)는 농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의 핵심부품개발과 부품신뢰성평가를 주요 업무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전략기종 육성을 도모함. “센터”는 기본적으로 2과 25명을 정원으로 조직을 구성함. “센터”는 농기계의 품질고도화/부품공용화/부품전문업체 발굴육성/부품성능평가/신뢰성평가/지능형센서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센터”의 구축에 필요한 단기적 소요 재원은 총사업비 965.9억원의 30% 수준인 289.6억원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총사업비^{보고서 44쪽}에 포함되어 있음.

- ❖ 부품연구센터 관련 사업비 : 289.6억원 (건설비용 166, 토지매수 97.3, 예비비 26.3)
  - ▶ 토지매수비 : 97.3억원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공시지가 기준)
  - ▶ 센터건설비 : 166억원 (총사업비의 30% 수준, 건설 148, 장비구축 18)
  - ▶ 예 비 비 : 26.3억원 (사업비의 10% 산정)

■ **“진흥원_부품연구센터” 필요성** ‘78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업기계화는 ‘18년 현재 벼농사 98.4%, 밭농사 60.2%를 달성하였음³⁶⁾. “진흥원_부품연구센터”는 핵심 농기계, 파급효과가 큰 트랙터를 중심으로 고품질 부품개발 및 공용화 추진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원가절감은 내수 및 수출 증대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농기계 모델기종은 정부지원대상(용자) 기준으로 11,246개인데, 이 중에서 핵심농기계(트랙터·이앙기·콤바인)는 899개로 전체의 8%를 구성하고 있음. 핵심농기계는 ‘18년 기준으로 전체 농기계 용자판매액의 78.1%(5,959억원), ‘19년 기준으로 농기계 수출액의 56.8%(642.5백만불)이고, 자주식을 포함하면 용자판매액의 87%, 수출액의 75%로 예상되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적용 농기계별 주요 농기계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6. “진흥원_부품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농기계산업 현황분석

구분	전체 농기계	핵심 농기계	자주식 농기계	기타
적용 농기계	농업용 트랙터 등 135종 ³⁷⁾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SS기, 고소작업차, 굴착기, 동력운반차, 로더, 리프트, 자주식 베일러, 무인항공방제기, 승용관리기, 동력분무기	부착작업기 등 농기계 일반, 기타
등록 모델 ³⁸⁾	11,246개 100%	899개 8%	752개 6.7%	9,595개 85.3%
용자판매액 ³⁹⁾	7,632억원 100%	5,959억원 78.1%	686억원 9%	987억원 12.9%
수출액 ⁴⁰⁾	1,132백만불 100%	642.5백만불 56.8%	489.8백만불 43.2%	

36) KOSIS. 2020. e-나라지표_농업기계화 현황([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88](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88))

37)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190101.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목차 4-6쪽

38)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20.02. 2020.2월2차(2월16일~2월29일 접수분)기준 정부지원용자모델신규 및 전체등록모델

■ **“진흥원_부품연구센터” 단계별 추진** “센터”의 단계별 추진은 “센터”와 “산업체군”이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계적으로 산업체 입장에서 연구개발에 부담이 되는 친환경 Tier 엔진 등 핵심 농기계 주요부품을 시작으로, 중기적으로 자주식 농기계로의 적용 및 확산과, 장기적으로 전체 농기계로 범위를 넓혀 소재기술 개발로 범위 확대가 필요함.

표 27. “진흥원” 부품연구센터 단계별 추진(안)

구분	단기	중기	장기
형식	핵심 농기계	자주식 농기계	기타
적용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SS기, 고소작업차, 굴착기, 동력운반차, 로더, 리프트, 자주식 베일러, 무인항공방제기, 승용관리기, 동력분무기	부착작업기 등 농기계 일반, 기타
적용 부품	친환경 Tier 엔진, 연비개선 전자제어 시스템, 전자식 무단변속 시스템, 고장진단 예방 시스템, 최적 통합제어 시스템, 농지 적응형 주행 장치, AI 무인운전 장치, 기타	핵심 농기계의 부품의 자주식 농기계 적용과 응용, 핵심.자주식 농기계의 부품 통일 및 공용화, 타산업군 적용 및 확산, 부품별 모듈화.시스템화, 소재기술 개발, 기타	핵심.자주식 농기계 부품의 기타 농기계 적용과 응용, 핵심.자주식.기타 농기계의 부품 통일 및 공용화, 타산업군 적용 및 확산, 부품별 모듈화.시스템화, 소재기술 개발, 기타
기능	정책대응·R&D·부품개발·수요발굴·R&BD·기술확산·산학연		

■ **“진흥원_부품연구센터” 단계별 시설 규모** “센터”는 단기/중기/장기별로 시설을 구축하는데, 핵심부품개발과 부품신뢰성평가를 주요 기능으로 함. 그러나 대부분의 농기계 부품은 각 제조사별로 국내외 생산·공급 체계가 구축된 상태인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품공용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조사 간의 노하우 공개 및 이해상충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난제임.

표 28. “진흥원” 부품연구센터 단계별 시설 규모(안)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적용 농기계	핵심 농기계	자주식 농기계 포함	기타 농기계 포함
조직 구성	2과(25명)	4과(50명)	8과(100명)
구축 시설	연구실험동/트랙/기자재	연구실험동/기자재	연구실험동/기자재
주요 기능	핵심부품개발과 부품신뢰성평가(품질고도화/부품공용화/부품전문업체 발굴 육성/부품성능평가/신뢰성평가/지능형센서 개발)		
비고	1)“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사전 준비단계로 기술수요 발굴, 표준규격 확정, 산업체 참여여부 확인, 정책적 목표 및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함. 2)“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부품개발의 전략수립 및 산업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3)또한, 전문업체 부품생산 및 공동이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39) 한국농기계신문. 20190115. “지난해 농기계판매액 7632억원에 그쳐..”, A2면

4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20. 자료실_수출입주요통계_2019년(<http://www.kamico.or.kr/homepage/tradeStatic.do>)

■ **“진흥원_부품연구센터” 구축 소요비용** “센터”는 단기(핵심 농기계) 부품연구의 시설구축에는 28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향후 농기계 범위를 확대하면 중기(자주식 농기계 포함) 138.6억원, 장기(기타 농기계 포함) 138.6억원이 추가 소요).

표 29. “진흥원” 부품연구센터 단계별 시설구축 소요비용(안)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총사업비(억원)		289.6	138.6	138.6
건설비	건설	148	96	96
	장비	18	30	30
토지매수비		97.3	-	-
예비비		26.3	12.6	12.6
비고	1)토지매수비는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공시지가(103,000원/m ² ) 기준으로 소요면적 94,500 m ² , 97.3억원 소요 추정함. 2)“진흥원” 설립 총사업비에는 단기 사업비를 적용하여 산출함.			

■ **“진흥원_부품연구센터” 운영유지비, 운영비 분석** “센터” 관련 운영유지비는 단기(2과 25명) 체계에서 연 8.7억원이 소요되고, 운영비는 연 7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시설 및 조직이 확충되는 중기(4과 50명) 체계에서는 운영유지비 연 12.9억원, 운영비 143.2억원이 소요되며, 장기(8과 100명) 체계에서는 운영유지비 연 17억원, 운영비 28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음과 같음.

- ❖ 단기 : 운영유지비 8.7억원/년, 운영비 71.6억원/년 소요
- ❖ 중기 : 운영유지비 12.9억원/년, 운영비 143.2억원/년 소요
- ❖ 장기 : 운영유지비 17.0억원/년, 운영비 286.4억원/년 소요

표 30. “진흥원” 부품연구센터 관련 연 소요 운영유지비, 운영비 분석

재정소요(안)		비용		운영비 ⁴¹⁾ (년)
구성	건설비	총사업비 (건설기간)	운영유지비 ⁴²⁾ (분석기간/30년)	
“부품연구센터”	단기 (2과 25명)	166	289.6	260.6 (8.7억원/년)
	중기 (4과 50명)	126	138.6	124.7
	장기 (8과 100명)	126	138.6	124.7
	합계	418	566.8	510 (17억원/년)

41) “진흥원” 추정 연구비 총액 238.7억원(보고서 44쪽)의 30%를 “부품연구센터에 적용함. “센터”의 단기(2과 25명) 연구관리비는 71.6억원/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중장기적으로 범위 및 조직 확대에 따라 중기(4과 50명), 장기(8과 100명)의 연구관리비는 각각 연 143.2억원, 연 286.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42) 총사업비의 3%를 운영비로 하여, 경제성분석 기간 30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진흥원_부품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예상 문제점** “센터” 구축은 “센터”에서 개발되는 각 부품이 해당 산업체군에 획일적으로 채택되고 적용됨을 전제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품공용화는 기술수요조사, 규격의 통일, 시장동향조사 및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중장기 로드-맵 마련, 부품개발의 전략수립, 종합형업체·부품전문업체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데, 예상되는 주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음.

- ❖ 40년에 걸쳐 생산체계를 갖춘 종합형업체의 참여와 기술·특허·노-하우 공유의 어려움
- ❖ 공용부품 생산 전문업체에 대한 종합형업체의 안정적·제도적·장기적 구매 가능성의 적음
- ❖ “센터”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종합형업체들의 통일적 동의 및 추진의 어려움
- ❖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중장기적 운영유지비 및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 **“진흥원” 설립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진흥원” 설립에 따른 기관의 추정 매출을 239억원으로 가정했을 때(보고서 44쪽 추정 연구관리비 수준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 1.658, 부가가치창출액 0.826, 수입유발액 0.143을 적용하면, 경제적 기대효과는 627억원으로 산출됨. 또한 고용창출은 취업 324명, 고용 288명 수준으로 나타남. 여기서, R&D 특성상 경제적 기대효과 및 고용창출은 설립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함.

- ❖ 직접적 경제효과 : 239억원 (연구관리비 총액 산정)
- ❖ 경제적 기대효과 : 627억원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계수 적용)
- ❖ 고용창출 : 229명 (한국은행 고용계수 적용)

표 31. “진흥원” 설립에 따른 추정매출과 경제적 기대효과

항 목	산업화	경제적 기대효과(십억원)			고용창출(명) ⁴³⁾	
		경제적 파급효과 ⁴⁴⁾	부가가치 창출액 ⁴⁵⁾	수입 유발액 ⁴⁶⁾	취업 ⁴⁷⁾	고용
직접적 경제효과 ⁴⁸⁾		23.9	23.9	23.9	23.9	23.9
계수		1.658	0.826	0.143	10.8	9.6
계		39.6	19.7	3.4	258	229
합계		62.7			229	

43) 한국은행. 2017. 산업연관표(<https://www.bok.or.kr/ebook/ecatalog5.jsp?Dir=2>)

44) 한국은행. 2017. 산업연관표_품목별 생산유발계수_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140쪽

45) 한국은행. 2017. 산업연관표_품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_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142쪽

46) 한국은행. 2017. 산업연관표_품목별 수입유발액_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142쪽

47) 취업의 정의 : 고용 통계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1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한 무급 가족 종사자, 직장 또는 운영 중인 사업체가 있지만 일시적인 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시 휴직자를 모두 취업자로 봄.

48) “진흥원” 설립시 예상되는 기관의 매출액을 직접적 경제효과에 적용함

### 제3절 시사점

- ◇ **조직 및 인력 배치**] “진흥원” 설립은 “과기출연기관법”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대상이고, “출연연” 설립을 의미함. “진흥원”은 분산된 농업기계 관련 조직과 인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농업기계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총괄 조직으로 출범하는데, 진흥원장 휘하 4본부 1센터 14개과 400명(정규직 150, 공무직·박사후·석사후·기타 250) 규모로 운영함.
  
- ◇ **비용 분석(총괄)**] 예타 기준으로 비용을 분석하면, 연구시설은 건설기간 총사업비와 건설후 30년간의 운영유지비 및 건설후 연구관리비로 대별됨. 산출결과, 총사업비 965.9억원, 운영유지비 869.3억원, 연구관리비 238.7억원으로 산출됐는데, 다음과 같음.
  - ❖ 총사업비 : 965.9억원(건설기간 3년)
  - ❖ 운영유지비 : 869.3억원(총사업비의 3%, 건설후 30년 합)
  - ❖ 연구관리비 : 238.7억원(건설후 매년)
  
- ◇ **“예타” 기준 경제성분석**] “진흥원” 설립 경제성분석에서 “편익/비용 비율”과 “순편익 내부수익률(IRR)”이 산출되지 않음. 또한, 편익이 없는 상태에서 “순편익의 현재가치(NPV)”는 △1,087.5억원으로 산출됨(또한, 같은 조건에서 경제성분석기간 30년의 운영유지비 869.3억원을 제외하면, NPV는 △696억원으로 산출됨). 여기에서 “의안 2328, 일부개정법률안”을 근거한 “진흥원” 설립은 공공목적으로 편익 산정이 어려운 사업으로 분석됨.
  
- ◇ **“진흥원” 설립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진흥원” 설립에 따른 기관의 추정 매출을 연구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239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경제적 기대효과는 628억원으로 산출됨. 또한 고용창출은 229명 수준으로 나타남. 여기서, R&D 특성상 경제적 기대효과 및 고용창출은 설립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함.
  
- ◇ **시사점**] “진흥원” 설립은 “과기출연기관법”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승인, 각 기관 통합 및 업무 재분장에 따른 갈등, 국가자산인 각종 연구장비, 천억원 이상의 기관이전 재원확보 및 기존부동산 매각의 한계, 구성원 신분변화에 따른 갈등요소 등 수많은 난제가 존재함. 또한, 통합 대상기관들이 혁신도시로 1차 지방이전한지 몇 년 안됐고, 이전 대상지인 전남/영광이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전남/광주권 혹은 전북/전주권에서의 이전 혹은 확대재편 고려도 필요함.

## **CH V . “진흥원” 설립시 장·단점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제1절**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화 정책을  
“진흥원”으로 통합시 장·단점 분석
- 제2절** 장·단점에 따른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 제3절** FGI (Focus Group Interview) 의견 수렴
- 제4절** 시사점

## CH V. “진흥원” 설립시 장.단점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장단점 분석 및 타당성 분석

-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 대응에 “진흥원” 설립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연구 및 실용화 조직을 “진흥원”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즉각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함
- “진흥원”은 국내 농업기계 연구개발 총괄기관으로 설립되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농업기계 개발, 산업육성,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핵심기관과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효율적 정책집행**] “진흥원”은 R&D, 정책지원 및 실용화를 담당하고, 민간과의 협력 확대, 산업체의 R&D와 수출 지원, 정부의 정책개발 지원 등을 통해 농업기계화와 농기계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R&D, 기술검정, 교육훈련, 정책지원, 산업체의 R&D·실용화·수출 지원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연구인력 관리, 연구시설과 예산 등 자원배분, 업무효과 제고 등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7. “진흥원” 설립에 따른 효율적 정부정책 집행

◇ **차별화**] 효율적인 정책실행을 위한 “진흥원” 설립은 독자적인 연구방향 수립, 집행 및 R&D에 필요한 ICT, AI, 로봇, 빅데이터 등 전문인력 확보에 유리함. “진흥원”은 농업기계화율 제고, 농기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량 다품목 농기계 개발 및 중소 농기계 산업체의 R&D 지원하고, 농기계 핵심 부품의 R&D를 통한 농기계 부품 수출 확대 지원하며, 미래 농업을 위한 ICT, AI, 빅데이터 등이 융복합된 첨단 농기계 개발로 차별화가 필요함.



## 제1절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화 정책을 “진흥원”으로 통합시 장·단점 분석

- ◇ **SWOT 분석]** “진흥원” 설립은 정책기관과 연구기관이 효율적인 정책실행을 위해 재편하는 것으로,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농업기계화 정책의 통합을 의미함. 그리고 각 기관별로 모든 제반업무의 대내외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전제로,
  - **1단계** * 각각의 S, W, O, T 분석과,
  - **2단계** * 내부환경(SW) 및 외부환경(OT) 분석으로 S/O, S/T, W/O, W/T 전략 수립으로,
  - **3단계** * 각 단계별 이동전략 수립하면,

S STRENGTHS	W WEAKNESSES	O OPPORTUNITIES	T THREATS
효과적인 정책집행	통합 조직간 조기 융합	산업체 반응 긍정적	외부 경쟁 생존 여부
정책집행 단일조직	“출연연” 경험 없음	농기계수출 호조	예산확보 및 외부과제 수주 불투명
연구개발 독자조직	“출연연” 수준 성과 창출		

그림 8. “진흥원” 설립시 농업기계화 추진 SWOT 분석

- ◇ **강점]** 농업기계화 촉진의 강력한 도구로서 “진흥원”은 통합된 조직과 농업기계 관련 연구 및 실용화 조직을 하나의 독자조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함
- ◇ **기회]** “진흥원” 설립에 산업체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 의견이 긍정적이며, 기존기관의 통폐합으로 부족한 기초, 기반, 미래농업, 실증, 융합연구 등의 기능부여 필요함
- ◇ **약점]** 연구개발 조직 대부분은 정부연구소로 “출연연” 형태의 “진흥원”이 R&D 수주에서 민간부분과 경쟁해야하고, 예산확보 및 외부과제 수주 불투명함
- ◇ **위협]** 연구조직과 실용화 조직의 조기 융합 및 구성원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출연연” 경험이 없고 경쟁에 취약하며, “출연연” 수준의 성과를 창출해야 함.

## 제2절 장·단점에 따른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 ◇ **정책 집행]** 농업기계화 촉진의 강력한 도구로서 “진흥원”은 통합된 정책실행 조직과 농업기계 관련 연구 및 실용화 조직을 하나의 독자조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관의 통폐합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연구의 강화와 그동안 미흡했던 기초·기반, 미래농업, 실증, 융합연구 등의 기능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 **비용 분석]** “진흥원” 설립을 위한 비용은 건설기간(3년) 총사업비와 건설후 운영유지비(30년) 및 건설후 연구관리비(매년)로 대별됨. 산출결과, 총사업비 965.9억원, 운영유지비 869.3억원, 연구관리비 238.7억원으로 산출되었음.
- ◇ **경제성분석]** “진흥원” 설립의 경제성분석에서 “편익/비용 비율”과 “순편익 내부수익률(IRR)”은 설립대상이 연구시설로 편익산정이 어려워 산술적으로 산출되지 않음. 이러한 조건에서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분석에서 “순편익의 현재가치(NPV)”는 △1087.5억원이 산출됨. 또한, 운영유지비를 제외하면, “순편익의 현재가치(NPV)”는 △696억원이 산출됨.
- ◇ **경제성분석 해석]** 여기에서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크면,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NPV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편익과 비용의 차이인데,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내부수익률이 일정한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내부수익률이 일정한 할인율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진흥원” 설립은 국가기반시설인 연구시설의 특성상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경제적 기대효과]** “진흥원” 설립에 따른 기관의 추정 매출을 연구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239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경제적 기대효과는 628억원으로 산출됨. 또한 고용창출은 229명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기서, R&D 특성상 경제적 기대효과 및 고용창출은 설립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임.
- ◇ **“진흥원”]** 과거 농기계산업은 60~70년대 산업화에 따른 농가인구 유출에 적극적인 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최근 농가인구의 고령화, 비전문 귀농인구의 증가,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의 증가, 식량자급률의 감소, 외국산 농업기계의 수입증가, 발농업기계화율의 낮은 성장률 및 국내 농업환경(소량생산에 따른 부품 공용화)의 변화 필요성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따라 “진흥원”은 국내 농업기계화 정책과 연구개발 총괄기관으로 설립되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농기계개발, 산업육성,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제3절 FGI (Focus Group Interview) 의견 수렴

◇ FGI "진흥원" 의견 수렴] FIG의 전체적인 의견은 분산된 농업기계 연구개발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방향에 산업경쟁력 제고, 싱크탱크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그러나 "진흥원"의 설립으로 정부주도, 행정중심에서 민간 중심, 연구 중심으로의 변화는 바람직하나, 인력수급 및 기관통합에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제시함. 또한 검정기관은 지방이전 1년 밖에 안돼서 예산낭비 소지가 많고, R&D는 기존조직으로 역할수행 중인데 신규조직 구성에 회의적은 의견도 있음.

표 32. FGI를 활용한 "진흥원" 설립 의견 수렴(요약)

대상	내용	시사점
전주대학교 최○홍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된 조직으로 정책수행 효율성이 떨어짐</li> <li>❖ 영농현황에 집중되어 산업경쟁력 제고 한계</li> <li>❖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이 늦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성과 수용성이 부족하여 효율성 높은 기관의 개편이 필요</li> </ul>
충남대학교 김○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산업체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li> <li>❖ 정부주도형 보다는 민간중심의 연구인프라 구축</li> <li>❖ 설립시 인력수급에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안보, 환경적 측면에서 중장기적 계획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함</li> </ul>
순천대학교 김○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계부품연구원으로의 설립이 좋겠음.</li> <li>❖ 대일무역 적자 및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설립</li> <li>❖ 주요 농기계 부품별 공용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부품 공용화로 품질향상 및 가격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함</li> </ul>
실용화재단 오○영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의 변화 찬성</li> <li>❖ 연구경쟁을 통한 우수연구자 배출 및 질적 향상</li> <li>❖ 검정기관이전은 예산낭비 소지 많고, 부적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기관의 이전은 많은 장비 이전 및 신설 구축이 따름으로 예산낭비 심함</li> </ul>
동양물산(주) 강○선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등의 다양화에 맞춰 신조직 구성 필요</li> <li>❖ 농기계산업 발전 로드맵 작성 등 싱크탱크 필요</li> <li>❖ 기초, 기반, 미래농업, 실증, 융합연구 기능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업종에서 기관별 업무 중복은 필연적임으로 1개의 조직으로 통합이 적절</li> </ul>
국립농업과학원 김○갑 연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조직 구성에 회의적(기존조직 역할 수행중)</li> <li>❖ 수출 및 발농업기계 R&amp;D에 직접적 지원 필요</li> <li>❖ 정책 전반의 체계적인 연구는 모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 개진함</li> </ul>
전북대학교 김○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계학회 차원에서 논의 필요</li> </ul>	

## 제4절 시사점

- ◇ **차별화]**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농기계 R&D·실용화를 선도하는 농업기계화정책 총괄 조직으로, “진흥원” 설립은 독자적인 연구방향 수립, 집행 및 R&D에 필요한 ICT, AI, 로봇, 빅데이터 등 전문인력 확보에 유리함. 또한, “진흥원”은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량 다품목 농기계 개발 및 중소 농기계 산업체의 R&D 지원하고, 농기계 핵심 부품의 R&D를 통한 농기계 부품 수출 확대 지원하며, 미래 농업을 위한 ICT, AI, 빅데이터 등이 융복합된 첨단 농기계 개발로 차별화가 필요함.
- ◇ **FIG]** 전문가 그룹은 분산된 농업기계 연구개발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방향에 산업경쟁력 제고, 싱크탱크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임. “진흥원”의 설립으로 정부주도, 행정중심에서 민간 중심, 연구 중심으로의 변화는 바람직하나, 인력수급 및 기관통합에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제시함. 또한 검정기관은 지방이전 1년 밖에 안돼서 예산낭비 소지가 많고, R&D는 신규조직 구성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음.
- ◇ **“진흥원” 필요성]** “진흥원”의 설립은 최근 농가인구의 고령화, 비전문 귀농인구의 증가, 여성 농업인 영농활동의 증가, 식량자급률의 감소, 외국산 농업기계 수입증가, 밭농업 기계화율의 낮은 성장율 및 국내 농업환경(소량생산에 따른 부품 공용화)의 변화 필요성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임. 또한, “진흥원”은 국내 농업기계 연구개발 총괄기관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농기계 개발, 산업육성,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관 존재의 필요성이 큼.
- ◇ **연구결과/시사점]** “촉진법_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한 “진흥원” 설립은 일관된 정책집행을 위한 필요성이 타당한 것이 인정됨. 그러나 이전대상 기관들이 1차로 지방이전한지 실용화재단 1년, 농업공학부 5년 밖에 되지 않아 예산낭비 여지가 많고, 이전비용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도 쉽지 않으며, 산출된 총사업비는 965.9억원, 운영유지비는 869.3억원 규모임. 그리고 경제성분석에서 “순편익의 현재가치(NPV)”는 △1087.5억원(운영유지비 제외 △696억원)으로 산출됨. 이상 연구결과, “진흥원” 설립후 2차 지방이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문 헌

- 1)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20년 농식품 R&D 신규사업 설명회_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사업 2020년도 추진계획 발표자료 43쪽
- 2) 국가정책포털(NKIS) 데이터베이스 기준([https://www.nkis.re.kr:4445/subjectResearch_list.do](https://www.nkis.re.kr:4445/subjectResearch_list.do))
- 3) 온-나라 정책연구 데이터베이스(<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 4) '19년 인사혁신처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5) saramin. 2019. 기업정보_2018년 평균연봉
- 6) 시사저널_1575호. 20191221. '기사_균형발전 전략' 근본적 재검토 없인 '악순환 반복'.
- 7) Tiendeo. 2019. <https://www.tiendeo.co.kr/>
- 8) 건설교통부. 2005.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 9) 국토교통부.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 (2003~2015)
-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 11) 국가과학기술연구회(<https://www.nst.re.kr/nst/index.jsp>)
- 1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5. 정부출연(연)의 미래대응역량지수 개발 연구
- 13) 박소희, 김승태, 김남희, "과학기술분야 출연기관평가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 1-17, 2008. & 2012 출연연 기관평가 편람. &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2015. 정부출연(연)의 미래대응역량지수 개발 연구
- 14)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고시스템. 2019. 영광군 재정자립도(결산) 23.32%([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state/sd002_tg003.xml](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state/sd002_tg003.xml))
- 15) 국토교통부. 2013.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현황
- 16) 국토교통부. 2015.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대책
- 17) 기획재정부. 201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11.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19) NKIS. 2019. 최근 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과제 목록
- 20) PRISM. 2019. 최근 5년 정책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발주과제 목록
- 21) PRISM. 2019. 최근 5년 정책관련 농촌진흥청 발주과제 목록
- 22) KAMICO. 2019. 농업기계 제조업체 현황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농업기계화촉진법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농촌진흥법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민법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30) 한국은행. 2019. 산업연관표(<https://www.bok.or.kr/ebook/ecatalog5.jsp?Dir=2>)

# 별첨

## 1. '18년 전남 영광군 통합공시 (총괄)

지표명	전남 영광군	동종단체			유사단체 평균
		평균	동종최고	동종최저	
세입결산	5,678	6,248	11,547	2,099	5,763
세출결산	4,111	4,519	8,619	1,474	4,088
기금현재액	73	153	732	13	140
지역통합재정규모[결산상잉여금]	1,568	1,746	4,309	613	1,692
지역통합재정상태[자산대비 부채비율]	0.55	1.54	9.16	0.25	1.78
재정자립도[결산]	23.32	23.31	54.84	10.15	19.09
재정자주도[결산]	69.83	70.39	77.73	56.76	69.73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0.14	5.9	28.92	-8.79	7.95
예산대비채무비율	0.01	0.45	3.79	0	0.33
지자체 부채비율	0.55	1.09	4.3	0.23	1.06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0	6.03	243.25	0	6.05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16	178	0	14
보증채무비율	0	0.07	3.83	0	0
채권현황	79	61	319	16	70
출자출연기관부채현황	23,791	22,590	35,927	5,262	21,926
공무원인건비비율	13.55	12.91	20.93	9.28	13.2
업무추진비비율	0.07	0.08	0.22	0.02	0.09
지방의회경비비율	0.1	0.1	0.22	0.06	0.1
연말지출비율	17.71	21.02	56.16	3.54	21.54
기본경비비율	0.68	0.65	1.25	0.15	0.65
맞춤형복지비 시행경비	0.01114	0.01077	0.01856	0.00651	0.01058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0.01	0	0.01	0	0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44	56	304	11	36
지방세 지출현황	16.64	13.73	29.24	7.26	16.01
지방세징수실적	253	340	3,037	43	184
사회복지비비율	19.38	19.96	39.12	8.72	18.12
지방보조금비율	9.1	8.15	14.67	4.38	8.64
행사·축제경비비율	0.2	0.51	2.35	0.08	0.58
공유재산 현재액	8,508	10,988	26,451	2,930	9,002
물품 현재액	61	80	541	4	93
출자·출연금비율	0.45	0.59	3.23	0	0.63
복식부기 재무현황[자산]	23,742	22,405	35,030	5,262	21,674
복식부기 재무현황[부채]	131	243	921	52	230
복식부기 재무현황[비용]	2,874	3,430	6,560	1,134	3,152
복식부기 재무현황[수익]	3,782	4,323	8,336	1,503	3,955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	-	-	-	-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	-	-	-	-	-
수의계약비율	36.65	34.43	67.26	2.99	40.68
공공시설운영현황	-	-	-	-	-
신속집행 실적	47.97	51.17	67.45	34.23	49.78
성인지결산현황	514	211	973	44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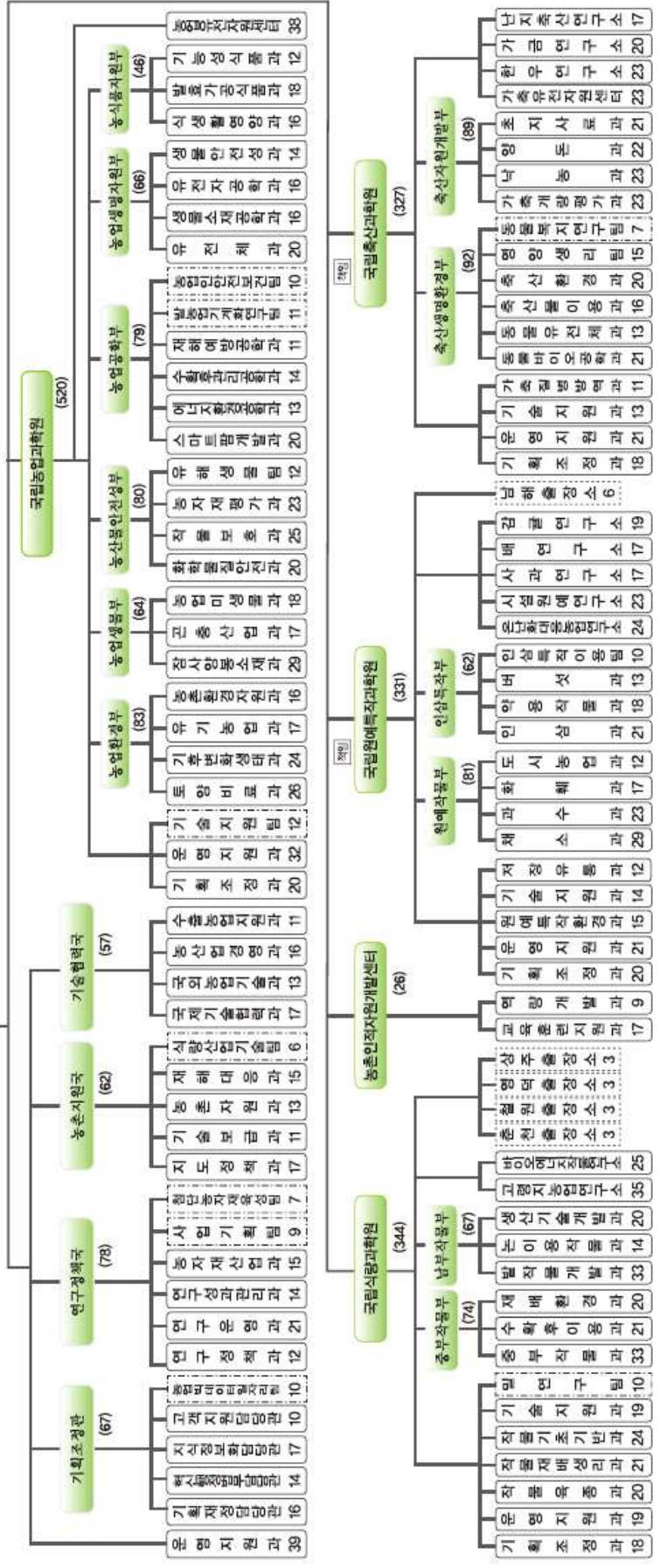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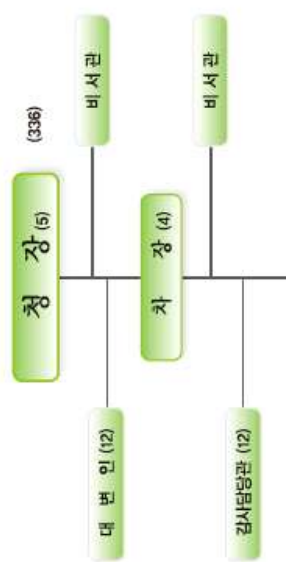
2. 애촌진흥청 기구표 (애촌진흥청, 20191201)

기구 및 정원

2019년 12월 1일 현재

기구	과					팀					소속기관					
	1	2	3	4	5	1	4	5	1차	2차	1차	2차				
총 정원	1	2	3	4	5	1	4	5	5	17	연구 지도	전문 경력관				
정무직	1	2	3	4	5	1	4	5	5	17	연구 지도	전문 경력관				
공무원	1	2	3	4	5	1	4	5	5	17	연구 지도	전문 경력관				
합계	1	2	3	4	5	1	4	5	5	17	연구 지도	전문 경력관				
기초	1,875	1	2	19	2	9	46	21	121	85	109	326	770	29	16	
무원	1,884	1	2	19	2	9	46	21	122	100	107	312	333	765	29	16

주) 과장급 92명(3·4급 9, 4급 46, 연구관 37)



* ( ) : 정원, [ ] : 정원

### 3. 최근 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과제 목록 ('15~'19, NKIS)

번호	구분	연도	과제명	예산(천원)
144	자체(기본)	2019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	71,481
143	자체(기본)	2019	남북한 경험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83,779
142	자체(기본)	2019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59,747
141	자체(기본)	2019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산림관리 효율화 방향	65,621
140	자체(기본)	2019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 과제	71,487
139	자체(기본)	2019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81,796
138	자체(기본)	2019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75,414
137	자체(기본)	2019	신선편이 과일? 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98,372
136	자체(기본)	2019	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96,426
135	자체(기본)	2019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79,920
134	자체(기본)	2019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74,163
133	자체(기본)	2019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81,194
132	자체(기본)	2019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89,900
131	자체(기본)	2019	수입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 과제	72,713
130	자체(기본)	2019	글로벌시대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 실태와 과제	97,598
129	자체(기본)	2019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96,765
128	자체(기본)	2019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87,126
127	자체(기본)	2019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 과제	88,394
126	자체(기본)	2019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81,237
125	자체(기본)	2019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99,279
124	자체(기본)	2018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	69,865
123	자체(기본)	2018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60,609
122	자체(기본)	2018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05,522
121	자체(기본)	2018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68,700
120	자체(기본)	2018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	67,882
119	자체(기본)	2018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54,253
118	자체(기본)	2018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	89,970
117	자체(기본)	2018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 병해충 관리 정책방향과 과제	67,026
116	자체(기본)	2018	국유림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림산업 활성화 방안	110,866
115	자체(기본)	2018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방안	92,316
114	자체(기본)	2018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방안	100,265
113	자체(기본)	2018	빅데이터를 이용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체계 구축 기초 연구	70,400
112	자체(기본)	2018	주요 농축산물 생산구조 국제비교분석과 경영성과 제고 방안	64,046
111	자체(기본)	2018	중소 식품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84,963
110	자체(기본)	2018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104,326
109	자체(기본)	2018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 및 전략 분석	78,335
108	자체(기본)	2018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71,183
107	자체(기본)	2018	주요 원예농산물의 수급환경변화와 대응방안	78,692
106	자체(기본)	2018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71,601
105	자체(기본)	2017	고령화 시대 대비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발전 방안	92,626
104	자체(기본)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59,045
103	자체(기본)	2017	농촌 지역사회발전 접근방법의 유형과 실천 과제	70,806
102	자체(기본)	2017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81,308
101	자체(기본)	2017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체감형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58,992
100	자체(기본)	2017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현황 및 육성방안	66,586
99	자체(기본)	2017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63,087
98	자체(기본)	2017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실태와 개선과제	66,757
97	자체(기본)	2017	농식품 수출시장별 소비 영향요인 분석 및 수출 활성화 방안	134,021
96	자체(기본)	2017	농업부문 바이오 소재 산업의 현황과 과제	61,890
95	자체(기본)	2017	농업용수 수요 특성 추정 및 물부족 대응 방안 연구	68,087
94	자체(기본)	2017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04,090
93	자체(기본)	2017	정부 농업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술개발 수요 분석	69,851
92	자체(기본)	2017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농산물조달현황과 개선과제	62,029
91	자체(기본)	2017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산촌마을 유형구분과 특성화 방안 연구	81,512
90	자체(기본)	2017	농업분야 ODA 기술협력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41,043



89	자체(기본)	2017	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101,789
88	자체(기본)	2017	과일 소비 트렌드 예측을 통한 과일산업 변화 전망과 과제	76,384
87	자체(기본)	2017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42,097
86	자체(기본)	2016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결정요인 분석	56,575
85	자체(기본)	2016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75,996
84	자체(기본)	2016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복지 증진 방안	66,696
83	자체(기본)	2016	가족농의 다면적 경제·사회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79,870
82	자체(기본)	2016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82,810
81	자체(기본)	2016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방안	59,889
80	자체(기본)	2016	기후스마트농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추진과제	96,816
79	자체(기본)	2016	한국인의 식품소비 심층분석	151,942
78	자체(기본)	2016	우리술 소비자 선호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76,617
77	자체(기본)	2016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연구	85,242
76	자체(기본)	2016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83,926
75	자체(기본)	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 과제	43,159
74	자체(기본)	2016	통일 북한의 산지관리 전략과 과제 연구	79,320
73	자체(기본)	2016	양념채소 저장 실태와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	77,029
72	자체(기본)	2016	과학기술 기반 농식품 벤처창업 촉진 방안	78,909
71	자체(기본)	2016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원료 이용 확대방안	74,415
70	자체(기본)	2016	서양채소 수급 실태와 공급 효율화 방안	76,689
69	자체(기본)	2016	FTA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60,000
68	자체(기본)	2016	로컬푸드 실천을 위한 농업경영체의 전략과 정책과제	59,473
67	자체(일반)	2016	식품소비행태조사 구축 및 운영	394,705
66	자체(일반)	2016	한국 농어촌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방향(2/5차년도)	424,667
65	자체(일반)	2016	중장기 양곡 정책방향(2/2차년도) -관세화이후 쌀 수출입 정책을 중심으로-	383,823
64	자체(일반)	2016	농산물 유통체계 국제 비교분석과 유통 정책 개선방향(1/2차년도)	293,000
63	자체(일반)	2016	개혁개방시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1/2차년도)	295,000
62	자체(일반)	2016	시장개방확대에 대응한 쌀 농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2/3차년도)	237,206
61	자체(일반)	2016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1/2차년도)	197,000
60	자체(일반)	2016	2016년 KREI리포터 운영사업	146,338
59	자체(일반)	2016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연구(1/2차년도)	99,000
58	자체(일반)	2016	직접지불제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1/2차년도)	99,000
57	자체(일반)	2016	농업·농촌 정책지원을 위한 통합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기초연구(2/2차년도)	88,985
56	자체(일반)	2016	국제곡물 시장분석과 해외 곡물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80,351
55	자체(일반)	2016	Post-FTA 농업통상현안 대응방안	149,000
54	자체(일반)	2016	유라시아시대의 해외농업투자와 사료곡물 확보방안 연구(1/2차년도)	148,000
53	자체(기본)	2015	동아시아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모델 개발 및 적용 연구	65,800
52	자체(기본)	2015	시설원예 생산자재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60,270
51	자체(기본)	2015	말산업 육성 현황과 발전 방안	46,356
50	자체(기본)	2015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61,829
49	자체(기본)	2015	축산 부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64,534
48	자체(기본)	2015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60,000
47	자체(기본)	2015	한중FTA시대 양국 농식품안전분야 협력방안	56,000
46	자체(기본)	2015	대북 식량지원체계 구축 방안	76,000
45	자체(기본)	2015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60,197
44	자체(기본)	2015	가정식 대체식품(HMR)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55,169
43	자체(기본)	2015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유형별 전문조직 육성방안 연구	61,414
42	자체(기본)	2015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품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72,049
41	자체(기본)	2015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다기능복합화 추진방안	47,340
40	자체(기본)	2015	농촌주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경제적 효과 분석	53,000
39	자체(기본)	2015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방안	64,000
38	자체(기본)	2015	농업재해보험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57,039
37	자체(기본)	2015	농업 효율화를 위한 들녘별 경영체 육성 방안	55,362
36	자체(기본)	2015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실태와 활성화 방안	55,947
35	자체(기본)	2015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55,026
34	자체(기본)	2015	농업·농촌분야 사회갈등 관리실태와 개선과제	55,854
33	자체(기본)	2015	미래농업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63,228
32	자체(기본)	2015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84,691

31	자체(기본)	2015	「한국형 ODA 모델」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년도)	64,895
144 과제				10,762,680

#### 4. 최근 5년 정책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발주과제 목록 ('15~'19, PRISM)

순번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사업 년도
1	시설동물보호소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잘키움 행동치료 동물병원	2018
2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및 농민에너지 협동조합 육성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3	가금 사육제한 시행결과 평가 및 실행지침 수립 연구	건국대학교	2018
4	농업 관련 정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5	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연동성 분석	제주대학교	2018
6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2018
7	급식 실태 및 식품지원제도의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8	환경친화 축산단지 조성계획 수립-스마트축산단지 ICT 시범단지 조성	한국농수산대학	2018
9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성공요인 분석 연구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2018
10	김치산업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2018
11	지방분권시대 농촌지역개발 거버넌스 정립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12	학교 과일간식 지원 타당성 연구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13	가축 폐사체 관리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2018
14	대한민국 농정역사 집대성 및 발전방향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15	병해충 방제산업 육성 및 법 제정 추진방안	서울대학교	2018
16	콩 소비시장분석 및 수요확대 방안	(주)트레이드파트너스	2018
17	선진공여국 사례조사를 통한 농업 ODA 효과적 정책마련	(사)글로벌발전연구원	2018
18	식량원조추진 효율화 방안 연구	(사)환경농업연구원	2018
19	자연재난 농작물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강릉원주대학교	2018
20	한국형 농업회이스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	2018
21	양분관리 매뉴얼 개발 및 환경부담금 도입 방안 연구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8
2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경제성 분석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8
23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24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 육성방안 마련	(주)호현에프앤씨	2018
25	농촌관광사업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방안	대구대학교	2018
26	제2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 연구	강원대학교	2018
27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2018
28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29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30	외국인 단기계절근로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 개선방안 연구	한국이민학회	2018
31	식품의 기능성 신고표시제 도입운영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8
32	농업융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33	친환경농업 정책성과 평가와 패러다임 전환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34	원예농산물 가격 보전사업 타당성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35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36	농업 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37	제2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방안 및 등급평가기준 마련 연구	건국대학교글로벌	2018
38	농림식품 및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지표화 방안 연구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18
39	'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백서 제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40	경영이양직불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41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 기반의 농업발전 전략	(사)농정연구센터	2017
42	축산업 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43	농산업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농업인력 수요전망	서울대학교	2017
44	농림식품과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45	가축개량 선진화방안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7
46	쌀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47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마련 연구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7
48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49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50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51	동물보호,복지업무를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2017

52	무농약가공식품인증제의 소비자 인식 및 산업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7
53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7
54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른 농업생명자원법 체계개편 연구 및 토종자원~	중앙대학교	2017
5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7
56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안) 마련 법제 연구	전북대학교	2017
57	일자리 창출수단으로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주)이암허브	2017
58	국가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2017
59	민간중심의 해외곡물 안정적 확보 및 도입방안 연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017
60	2017년 농협경제사업 평가지표 개선 및 성과평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7
61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한국법제연구원	2017
62	축산물 가격의무신고제 도입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2017
63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7
64	시설원예산업 육성방안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65	식품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식품산업진흥정책방안 마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66	농업경영체DB 활용 성과 및 시사점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67	OECD 정책들을 적용한 한국 농식품 분야의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68	쌀 관세화 이후 국내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양곡관리 제도 개선 관련 연구	GS&J인스티튜트	2017
69	귀농귀촌 법적 정의와 정책 및 통계와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사회학회	2017
70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효과 파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71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72	조사료 생산·소비 형태에 따른 유통물류체계 효율적 구축 방안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7
73	화훼재배현황 통계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2017
74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사)한국수의임상포럼	2017
75	상생협력 참여 농업기업의 성공전략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2017
76	농협사업구조개편 완료 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77	농업 농촌 관련 헌법조항 현황 및 개정 방향 연구	한국농업경제학회	2017
78	2018~202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79	동물인수제 도입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서정대학교	2017
80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81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82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상호이익 증대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2016
83	중장기 메가트렌드 분석과 농식품 분야 시사점 연구	주식회사 더비엔아이	2016
84	꿀벌질병 방역관리방안	경기대학교	2016
85	농식품 유통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관한 연구	(사)농정연구소	2016
86	정부관리양곡 판매확대 방안 연구	(주)나우엔퓨처	2016
87	간척지를 활용한 첨단친환경 축산클러스터 조성·운영방안 연구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6
88	6차산업 성과 점검 및 평가를 통한 향후 정책방안 연구	(주)정앤서컨설팅	2016
89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주식회사 에이비솔루션	2016
90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에 관한 기초조사	전남대학교	2016
91	고춧가루 혼합유통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92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93	6차산업 창업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정책연구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16
94	2016년 농협경제사업 성과평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6
95	가축단계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상 질병 확대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2016
96	농업분야 인력용역회사 활성화 방안 연구	(사)농정연구소	2016
97	한중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98	농생명 기능성 소재산업 육성방안 마련 연구	(주)더비엔아이	2016
99	농산물 소비관측 도입 및 운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00	對중국 농식품 비관세 사례조사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에버미트파트너즈	2016
101	쌀 해외 수요확대(수출, 식량원조 등)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2016
102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연구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6
103	농업통상 50년사 발간	GS&J인스티튜트	2016
104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DB 분석 및 활용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05	식품·외식산업 정책평가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2016
106	식물공장 중장기 정책 수립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2016
107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창조마을 모델 개발 연구	(재)건설산업정보연구원	2016
108	구제역 백신주 선정 경제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09	친환경인증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표시기준~	한국식품연구원	2016

110	쌀 관세화 시대 쌀 유통구조 개선방향 연구	(재)지에스앤제이인스티튜트	2016
111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12	미래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13	스마트 팜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14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15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1년~2020년) 중간평가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16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전략과 개혁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에이스탐연구소	2016
117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18	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19	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효율화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20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6
121	중장기 원예특용 작물의 수급·소비량 분석 및 대응방향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22	「인삼시장의 소비형태 변화와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인삼산업법 전면 개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23	가축질병공제 사업추진모델 개발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2016
124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향 연구	법무법인 수호	2016
125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운영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26	쌀 의무자조금 도입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2015
127	들녘경영체 운영효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28	쌀의 신수요 개발 연구	한국식품연구원	2015
129	가뭄 대응능력 분석 시범모형 개발	(주)수리이앤씨	2015
130	일본농정개혁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31	한우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	2015
132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사)환경농업연구원	2015
133	2014-2015년 구제역 발생원인 분석 및 방역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34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35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2015
136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안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37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38	밭작물 경영규모별 농기계 이용형태 및 경영비 상관분석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5
139	농업법인 통계조사 개선방안	(사)환경농업연구원	2015
140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41	농촌 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42	2015년 농협경제사업 평가지표 개선 및 성과평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5
143	기능성식품산업 발전 방안	단국대학교	2015
144	농림부문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강원대학교	2015
145	중장기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재)지역재단	2015
146	국민경제를 고려한 미래 축산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47	나고야의정서 대비 농식품분야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 연구	(주)이암허브	2015
148	GAP 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2015
149	WTO/DDA 협상대응 시나리오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50	농촌 지역발전 비전 및 지역개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5
151	중장기 곡물수급분석 및 대응방향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52	5대 민감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53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54	학교 단체급식산업 국산 식재료 공급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2015
155	농촌연계관광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구	강원대학교	2015
156	도축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57	농업 직업교육체계 개편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5
158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연구	건국대학교	2015
159	농협의 역할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60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61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62	농산물 유통 및 수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63	도시농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64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	한국농업경제학회	2015

## 5. 최근 5년 정책관련 농촌진흥청 발주과제 목록 ('15~'19, PRISM)

순번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사업 년도
1	국익 증진을 위한 농업분야 국제회의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	(주)이암허브	2018
2	지역농업특화를 위한 농촌지도체계 유통화 및 전략개발 연구용역	아이엔케이	2018
3	과수화상병 외국사례분석을 통한 예찰방제사업 방향설정	경희대학교	2018
4	2018년 농촌진흥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사)국민농업포럼	2018
5	성과기반 조직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2018
6	KOPIA 사업 10년 성과 분석을 통한 KOPIA 브랜드 가치 평가	(사)서울행정학회	2018
7	KOPIA 시범마을 종료사업 평가 및 KOPIA 4개국 2차사업 성과 진단	(사)한국행정학회	2018
8	신기술보급사업 현장확산 성과 및 우수사례 분석	(주)정앤서컨설팅	2018
9	농업현안해결기술 사업성과관리 및 현장확산 고도화	(주)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	2018
10	농업환경자원 안전관리 제도화 전략 수립	강원대학교	2018
11	제4차산업혁명시대 대응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교육과정개발(조직혁신포함)	(주)케이엠플러스컨설팅	2018
12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13	올바른 식품소비를 위한 영양정보 개발 및 보급	한국영양학회	2018
14	농촌진흥청 주요정책의 미래대응 삶의 질 향상 기여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가치솔루션	2018
15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정부혁신과제 재설계 및 대외확산 전략 수립	(주)글로벌공공정책연구원	2018
16	군지않는 떡 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주)이암허브	2018
17	미생물 신기능 소재 발굴에 관한 산업동향 분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8
18	빙초산 사용 저감화를 위한 실태조사 분석	마크로밀엠브레인	2018
19	첨단 농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자격 개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2018
20	특·약용작물의 농생명 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방안 연구용역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2017
21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발전전략 개발	(사)농정연구센터	2017
22	KOPIA 공적개발원조(ODA) 평가	가톨릭대학교	2017
23	지역농업특성화 성과분석 및 융복합산업화 발전방향	에코비즈	2017
24	ICT기반 정밀농업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충남대학교	2017
25	투자회수율(ROI)을 활용한 교육성과분석	(주)케이엠플러스컨설팅	2017
26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 국제협력사업 성과분석	건국대학교	2017
27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인지적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28	2017년 국민디자인단 운영(정부3.0 컨설팅 및 대외확산)	(주)글로벌경영연구소	2017
29	문제기반학습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엑스퍼트컨설팅	2017
30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운영전략 개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17
31	신기술보급 사업평가 및 현장효과 분석	(주)정앤서컨설팅	2017
32	기후변화대응 기술보급 추진방향 로드맵 수립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2017
33	농업기술 공여 및 협력에 관한 법제화 연구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7
34	농촌진흥청 법제화 수요 발굴·진단	한국법제연구원	2017
35	농촌진흥사업 일자리 창출 성과분석 및 개선 연구	전북연구원	2017
36	농업미생물 기술보급 추진방향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경상대학교	2017
37	4차산업혁명 대응 기술보급 추진 방안	(주)정앤서컨설팅	2017
38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농촌진흥청 조직체계 개편 방안	(사)서울행정학회	2017
39	성과중심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	(사)한국행정학회	2017
40	ICT 융복합 농기계 기술동향 및 교육체계 개선 용역	(주)라온과 기술	2016
41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 평가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2016
42	농식품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성과분석	(사)농정연구센터	2016
43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농업기술수준 및 국제경쟁력 향상효과 분석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2016
44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국제협력사업 성과 분석	서울대학교	2016
45	농촌진흥청 스마트 오피스 매뉴얼 개발	(주)테트라건축사사무소	2016
46	권역별 지역농업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에코비즈	2016
47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48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선방안 연구	(주)글로벌경영연구소	2016
49	위해성 평가 기반 농자재 등록·안전관리 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주)이암허브	2016
50	미래유망산업 '농업'에 진출하는 기업 사례분석	(사)국민농업포럼	2016
51	우리쌀 소비촉진 교육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6
52	신기술보급 사업평가 및 정책사업화 사례조사 분석	(주)정앤서컨설팅	2016
53	전문지도연구회 성과분석 및 미래비전 수립 용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54	성과면담 매뉴얼 개발	(주)굿러닝가치향상센터	2016
55	정부3.0 안심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사업 파급효과 분석	(주)굿러닝가치향상센터	2016

56	현장문제해결형 심화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주)엑스퍼트컨설팅	2016
57	투자회수율 및 성공사례기법을 활용한 교육성과 분석	케이엠플러스컨설팅	2016
58	시범사업 농가 판매 마케팅 연계 수익모델 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2016
59	청 핵심가치 및 홍보 실행 방안 구체화 연구	(주)글로벌리서치	2016
60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체계 정립 및 성과분석	(주)엘케이경영연구소	2016
61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 등 6차산업화 시범사업 성과분석	(주)엘케이경영연구원	2015
62	지방이전에 따른 조직문화 변화관리 방안 연구	주식회사 밸류플렉스	2015
63	KOPIA 케냐 센터의 농업기술협력사업 평가 용역	서울대학교	2015
64	지방이전 및 정책환경변화 대응 조직기능 진단분석	(사)서울행정학회	2015
65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국제협력 사업성과 분석 용역	건국대학교	2015
66	아시아새마을운동 연계 시범마을 조성사업 성과평가 용역	가톨릭대학교	2015
67	쌀 블렌딩 방법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주)농식품가치연구소	2015
68	농촌진흥청 주요정책의 국민편익 영향도 분석	(주)엘케이경영연구원	2015
69	농촌진흥청 협업과제 진단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5
70	농업연구개발 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 및 활용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71	신기술보급 사업평가 및 경제성 분석	(주)글로벌경영연구소	2015
72	평생학습을 위한 농업인교육 추진체계 정립 및 성과분석	케이엠플러스컨설팅	2015
73	고객 유형별 청 인지도 제고 전략 개발	(주)글로벌리서치	2015
74	ICT와 연계한 기술보급 방향설정 및 로드맵 수립 연구	(주)정앤서컨설팅	2015
75	신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한 농촌지도 중장기 과제 발굴	(주)엘케이경영연구원	2015
76	투자회수율 및 성공사례기법을 활용한 교육성과 분석	케이엠플러스컨설팅	2015
77	전문지도연구회원 역량강화 모듈학습프로그램 개발	(주)엘테크엠앤씨	2015
78	농촌진흥청 성과계약 발전방안 연구	(주)굿러닝가치향상센터	2015
79	교육훈련사업의 현업적용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장기 사업과제 발굴	(주)엑스퍼트컨설팅	2015
80	정부3.0 브랜드 전략 수립 및 디자인 개발 용역	(주)브랜드빈	2015

6. '19년 현재 농업기계 현황 (KAMICO, 2019)

《 농업기계 산업 현황 》

(단위 : 억 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내 수(A)	20,570	21,010	21,032	23,957	22,989	21,520	22,527
수 출(B)	8,206	9,185	9,471	9,805	9,114	10,812	12,504
수 입	5,863	6,017	5,940	5,235	5,183	6,252	6,732
합 계(A+B)	28,776	30,195	30,503	33,762	32,103	32,332	35,051

《 농업기계 산업 인력 고용 현황 》

(단위 : 명)

구 분	'18말 업체수	연 도				
		'14	'15	'16	'17	'18
생산업체	798	22,632	23,258	22,095	18,780	18,498
서비스업소	2,207	11,423	11,800	11,126	10,314	9,011
민간대리점	1,597	8,212	8,325	8,076	7,833	7,186
농협업소	683	3,211	3,475	3,050	2,481	1,825
계	3,005	34,055	35,058	33,221	29,094	27,509

《 농업기계 수출입 현황(총괄) 》

(단위 : 대, 천\$)

구 분	2018년		2017년	전년대비 (a/b,%)
	수량	금액(a)	금액(b)	
수 출(A)	905,085	1,042,189	900,549	115.7
수 입(B)	3,318,094	561,142	521,632	107.6
수지(A-B)	-	481,047	378,917	127.0

《 농업기계 수출입 기종별 수출실적 》

(단위 : 대, 천\$)

기종명	2018년			2017년	전년대비 (a/b,%)
	수량	금액(a)	비중(%)	금액(b)	
트랙터	56,913	652,487	62.6	545,196	119.7
콤바인	4,736	1,971	0.2	4,955	39.8
이앙기	16,698	4,407	0.4	6,438	68.5
방제기	86,414	5,096	0.5	5,675	89.8
작업기	136,570	89,084	8.5	73,156	121.8
도정기계	27,006	16,833	1.6	18,719	89.9
부 품	-	114,751	11.0	102,574	111.9
기 타	576,748	157,560	15.2	143,836	109.5
합 계	905,085	1,042,189	100.0	900,549	115.7

## 《 농업기계 제조업체 현황 》

(단위 : 개사, %)

공 급 기 종	2014		2015		2016		2017		2018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총 합 형	5	0.7	5	0.6	5	0.6	5	0.6	5	0.6
트랙터작업기	149	19.4	153	17.6	154	17.5	152	17.7	149	18.7
농용난방기 (전기난방기)	150 (94)	19.6 (62.7)	165 (107)	19.0 (64.8)	166 (112)	18.8 (67.5)	135 (91)	15.8 (67.4)	117 (81)	14.7 (69.2)
농산물선별기	36	4.7	38	4.4	37	4.2	35	4.1	33	4.1
잔가지파쇄기	9	1.2	9	1.0	9	1.0	9	1.0	5	0.6
농산물건조기 (전기건조기)	65 (62)	8.5 (95.4)	68 (65)	7.8 (95.6)	67 (64)	7.6 (95.5)	70 (63)	8.2 (90.0)	65 (60)	8.1 (92.3)
경운기작업기	10	1.3	11	1.3	11	1.2	10	1.2	8	1.0
톱밥제조기	1	0.1	1	0.1	1	0.1	0	0.0	0	0.0
농산물결속기	8	1.0	11	1.3	11	1.2	11	1.2	9	1.1
농용로우더	6	0.8	7	0.8	7	0.8	8	0.9	8	1.0
연무기	16	2.1	16	1.8	12	1.4	8	0.9	6	0.8
농용고압세척기	3	0.4	3	0.3	2	0.2	4	0.5	4	0.5
곡물건조기	2	0.3	2	0.2	1	0.1	1	0.1	1	0.1
동력운반차	26	3.4	30	3.5	32	3.6	32	3.7	27	3.4
동력파종기	3	0.4	3	0.3	3	0.3	3	0.4	4	0.5
농용콘베이어	11	1.4	11	1.3	10	1.1	10	1.1	8	1.0
상토제조기	1	0.1	1	0.1	1	0.1	0	0.0	0	0.0
S S 기	3	0.4	4	0.5	4	0.5	4	0.5	6	0.8
관작업기	6	0.8	5	0.6	4	0.5	4	0.5	6	0.8
마늘줄기절단기	3	0.4	3	0.3	3	0.3	3	0.3	1	0.1
육묘용파종기	4	0.5	4	0.5	4	0.5	5	0.6	4	0.5
곡물이송기	5	0.7	5	0.6	5	0.6	4	0.5	4	0.5
굴삭기	6	0.8	6	0.7	5	0.6	5	0.6	5	0.6
농용환풍기	3	0.4	2	0.2	1	0.1	1	0.1	1	0.1
마늘쪽분리기	2	0.3	2	0.2	2	0.2	1	0.1	1	0.1
축분고액분리기	5	0.8	5	0.7	5	0.7	5	0.6	5	0.6
콩탈곡기	13	2.2	12	1.7	11	1.4	10	1.2	10	1.1
기 타	141	21.2	192	27.8	223	29.1	288	33.2	309	35.2
총 합 계	599	100.0	689	100.0	767	100.0	868	100.0	881	100.0

주) 1. 기종별 업체수는 업체가 생산하는 기종 중 주력 생산기종에 포함함(중복 없음).  
 2. 종합형업체 : 대동, 국제, 동양, LS, 아세아



# 관련 법률

(LAW, 2019)

## 1. 농업기계화촉진법 (약칭 : 농업기계화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71호, 2018. 12.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0, 184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4.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6. 12., 2015. 6. 22.>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 4. 1.]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4. 1.]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4. 1.]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6. 12., 2018. 2. 21.>  
1.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1의2.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

용화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1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 9. 1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9. 18.>

[전문개정 2009. 4. 1.][제목개정 2018. 9. 18.]

**제6조** 삭제 <2018. 9. 18.>

**제6조의2(수요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 ⑤ 심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 8. 11.>
-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본조신설 2013. 6. 12.]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본조신설 2009. 4. 1.]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1.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
  4. 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삭제 <2013. 6. 12.>
- 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2.> [본조신설 2011. 11. 22.]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파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 3. 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신청·기준·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9. 4. 1., 2013. 3. 23.>[제목개정 2009. 4. 1.]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8. 11.]

**제10조(검정의 무효·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안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4. 1.]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4. 1.]

**제12조(안전관리)** ① 삭제<2017. 3. 14.>

② 삭제<2017. 3. 14.>

③ 농업용 트랙터, 콤파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3. 1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제4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14.>[전문개정 2009. 4. 1.]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1. 7. 14.]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6. 12.]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6. 12.]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6. 12.]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6. 12.]

**제1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 2.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전문개정 2013. 6. 12.]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1. 7. 14., 2013. 3. 23.>[전문개정 2009. 4. 1.]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 6. 12.]

**제17조** 삭제<1999. 3. 31.>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5. 23., 2015. 8. 11., 2017. 3. 1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 1의3. 삭제<2017. 3. 14.>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자
-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4.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4. 1.]

**부칙** <제16071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농촌진흥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50호, 2013. 8. 13, 전부개정]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63-238-0453

농촌진흥청(국제기술협력과) 063-238-1111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19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063-238-091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 다.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 마.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 사.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 육성
  -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농촌진흥사업

### 제1절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 및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연구개발사업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이나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비를 정당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9조(현장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

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으로 얻어진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3절 농촌지도사업

-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4절 교육훈련사업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절 국제협력사업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학술교류 활동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중사 공무원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29조(시상)**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0조(농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이하 "농업 산·학협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장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

**제31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②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적인 학술에 관한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4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실용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실용화재단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용화재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용화재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용화재단은 제3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보칙

**제3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실용화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3.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0, 3166, 3799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3735, 4264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736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주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주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제49조제2항에 계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

- 다.
-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 이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

7. 12. 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부출연기관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47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 044-200-2568

#####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8. 4.]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 8. 4.>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 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연구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 제3장 연구회 <개정 2011. 8. 4.>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9. 11. 26.>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개정 2017. 12. 12.>
-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1. 8. 4.]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5. 29.>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

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 제4장 보칙 <개정 2011. 8. 4.>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개정 2011. 8. 4.>

② 삭제 <2004. 9. 23.>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개정 2011. 8. 4.>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1. 8. 4.]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표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8. 4.]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전문개정 2011. 8. 4.]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본조신설 2017. 12. 12.]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 제5장 벌칙 <개정 2011. 8. 4.>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11. 8. 4.]

**부칙** <제16647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과기출연기관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 044-202-4751, 4753

### 제1장 총칙 <신설 2014. 5. 28.>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 5. 28.]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6. 7.]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 5. 28.>[전문개정 2011. 6. 7.]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1.>[전문개정 2011. 6. 7.]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6. 7.]

### 제2장 연구기관 <신설 2014. 5. 28.>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7.]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8.>[전문개정 2011. 6. 7.]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7.]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5. 28.>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5. 28.>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2조(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5. 28.>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전문개정 2011. 6. 7.][제목개정 2014. 5. 28.]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본조신설 2014. 5. 28.]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2. 30., 2017. 7. 26.]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3. 11.>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5. 3. 11.>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7.]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3. 11.,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전문개정 2011. 6. 7.]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6. 7.]

**제3장 연구회** <신설 2014. 5. 28.>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개정 2014. 5. 28., 2017. 7. 26.>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전문개정 2011. 6. 7.]

**제19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예산·평가·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21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5. 28.]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전문개정 2011. 6. 7.]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4. 5. 28.>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1. 6. 7.]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5. 28.>

-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전문개정 2011. 6. 7.]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7. 26.>
- ④ 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7.]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체상·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3. 4. 5.]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5. 28.>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7.]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5. 28.>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6. 7.]

**제26조(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7.]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전문개정 2011. 6. 7.]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제4장 보칙** <신설 2014. 5. 28.>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18. 1. 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18. 1. 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전문개정 2011. 6. 7.]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7.]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 및 제2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 6. 7.]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등)**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협동·융합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15. 12. 1.>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

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전문개정 2011. 6. 7.][제목개정 2015. 12. 1.]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1.]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6. 7.]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 6. 7.]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7. 7. 26.>[전문개정 2011. 6. 7.]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6. 7.]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

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30.]

**제5장 벌칙** <신설 2014. 5. 28.>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1. 6. 7.]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4. 5. 28.]

**부칙** <제15344호, 2018. 1. 16.>(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6.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13. 12. 13] [법률 제11874호, 2013. 6. 1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2456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1.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이란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발, 재배, 사육, 포획, 양식(養殖),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2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물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수산물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수산물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29.>

**제5조(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목표
3.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대책
4.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6.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7. 그 밖에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④ 삭제 <2011. 7. 14.>

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및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12.>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4의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과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물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의2(농림수산물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농림수산물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 정보·특허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정보 등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2. 농림수산물 분야 과학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농림수산물 분야의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10조(농림수산물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육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수산물 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발한 우수한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물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과 그 밖에 농림수산물과학기술로서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의 선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어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개발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수산물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기관·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수산물과학기술 국제 공동 연구  
2. 농림수산물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개발 교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남북한 농림수산물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남북한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2. 남북한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상호연수·교육
3. 남북한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 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수산물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제2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6. 12.]

**부칙** <제11874호, 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실용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우수실용기술로 발굴된 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시행 2019. 5. 1.]  
[기획재정부훈령 제435호, 2019. 4. 25., 제정.]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044-215-5418

###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수행과 관련된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결과의 제출
  3.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4.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5.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6. 법 제38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결과에 관한 자료 공개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

**제5조(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기타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조정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조사 방법·수행과 결과에 관한 사항
2.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운영, 조사수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정보화·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개정
4. 기타 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 및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이 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 산업, 재정, 사회기반시설,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 '사회·문화·산업 분과위원회', '사회복지·소득이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 해당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책임연구원(이하 "PM"(Project Manager)이라 한다)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

련된 분야 또는 경제·사회·환경·안전 등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7인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에 한해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평가에 참여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2.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이상 또는 전직 교수인 자
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
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기타 위원장이 제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⑤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1. 해당사업 PM이 사업개요, 수요 및 비용 검토 결과를 보고
  2.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 관계자가 정책성 평가 항목별 기대효과를 설명
  3. 해당사업 PM이 제2호의 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
  4. 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관계자, PM간 질의·응답
  5.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실시.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종합평가 결과에 비일관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고 재평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회 위원은 종합평가서에 서명한 후 분과위원장에게 제출
  7.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회의를 종료
  - ⑦ 분과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⑧ 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소속하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⑨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종합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 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종합평가결과, 분과위 논의사항 등 정책제언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12조(실무조정위원회)** 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조정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위원은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하의 일반직공무원, 당해사업 PM,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2. 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분석기준
    4. 기타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위원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 및 회의록,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 제15조(대상사업의 유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③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총사업비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용자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에는 제외),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도 포함되



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③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

④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2.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⑤ 민간투자사업 중 BTL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 국가가 장래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신규 사업의 정의)**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②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20조(면제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공공청사는 국가가 헌법,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과 그 대지, 특별법에 따라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도 포함한다(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도 준용하며,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의 경우 사무용 및 주차장 등 순수 청사시설이 전체시설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에 따른 청사의 수급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의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21조(예타면제 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 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 4. 9 이전)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비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며 기본사업비·정책연구비·출연금 등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는 제외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09년 1월 현재 기본설계 등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으로 한다.

③ 예타 제도 도입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계획(1996~2026)과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1996~2026)에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09년 1월까지 설계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 제5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제25조(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별 1회)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의를 거쳐 수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

는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3조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1.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2. 사업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특히, 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
3.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4. 사업의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5.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6.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제27조(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 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안) :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 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국고 지원의 적합성
  4.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의 정책효과
  6.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수행 이력
  9.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 ② 그 밖에 사업유형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2. 정보화사업 : 정보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시스템 구축의 범위,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등
  3. 기타 재정사업 :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률, 사업진행 절차 및 전달체계 등

**제2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검토)**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분야별 검토·조정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요건 해당여부, 사업간 중복·연계성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전 검토의 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2개 이상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직권 선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금융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대상사업 선정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도로·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사업부지(건축사업) 또는 노선(도로·철도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한함) 등의 구체화 여부
3. 사업 추진의 시급성 :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4. 국고지원의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
5.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낙후도 수준,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6. 기술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

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제1항의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
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3. 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된 사업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조사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3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지침, 분야별 표준지침 준수 여부
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

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 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원 전공·연구 분야·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개월(철도부문 6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분석범위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다수의 수행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할 때에는 수행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제41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② 정보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특수상항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4.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시행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 지역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제43조(경제성 분석)** ① 제33조에 의한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②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③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정책성 분석)** ①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 특수평가항목(선택) 등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조달위험성, 문화재 가치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특수평가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제45조(지역균형발전 분석)** ①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② 제1항의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 중 지역낙후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기술성 분석)** 기술성 분석은 업무요구 부합성, 적용기술 적합성,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분석한다.

**제47조(경제사회 환경 분석)** 경제사회 환경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사업추진 적정성,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비교 등
2. 경제사회 영향분석: 사업 추진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등
3. 재정지속가능성: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미래 재정위험 초래 가능성 등
4. 그 밖에 경제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8조(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문제인식과 정책목표 명확성, 정책우선순위 등
2. 수혜대상의 적절성: 사업대상의 명확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수요 등
3.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 기존정책과의 정책조합 등
4. 전달체계의 적절성: 전달체계 명확성 및 효율성, 수요자 접근 용이성, 집행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가능성 등
5. 그 밖에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9조(비용-효과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사업시행 효과의 구체성, 현실성, 명확성 등
2.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 산정의 적정성, 추가적 비용 발생 가능성, 수요변동에 따른 비용변동 가능성 등
3. 비용-효과성: 비용 대비 성과 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대안 검토 등
4. 그 밖에 비용-효과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0조(종합평가)** 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2. 정보화 사업

· B/C 분석시: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 E/C 분석시: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3. 기타 재정사업

· B/C 분석시: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 E/C 분석시: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③ 정책성 평가 항목 중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특수평가 항목의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1. 사업특수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여건 30~40%, 정책효과 60~70%

2. 사업특수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추진 여건 20~30%, 정책효과 50~60%, 사업특수평가항목 20~30%

④ 사업 특수평가항목 중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이미 확보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총사업비의 50% 재원을 확보한 경우 5점...90% 이상 확보한 경우 9점 부여

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대해 일괄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지 AHP 또는 그 외에 개별사업간 연계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 대규모 개발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적절한 방법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1. 3개 평가항목 모두 85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적정
2. 3개 평가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요구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경우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51조(정책제언)**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이외에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과 대안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②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 향후 재정지출의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 및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제8장 타당성재조사

**제52조(타당성재조사)**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타당성재조사 요건, 절차, 조사내용 등은 국가재정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타당성재조사 요

건에 해당되나, 제2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장 시범적 예비타당성조사

- 제54조(시범적 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4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분야의 확대 또는 정책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0장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

**제55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7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2. 수요예측 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국가재

정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구개발 및 재정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매2년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435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35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 제2항 및 제6항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 ② 제20조 제1항 1호, 제39조, 제44조, 제50조 제3항 내지 제4항 개정규정은 2019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사업부터 적용한다.
- ③ 제5조 내지 제13조, 제21조 제2항, 제25조, 제32조 제1항, 제40조 제3항, 제51조, 제55조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선정 특례)** 제36조 제1항과 제38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탁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이용 상의 주의 >**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용역에 의해 작성되었음.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
3. 본 보고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허락을 얻어야 함.